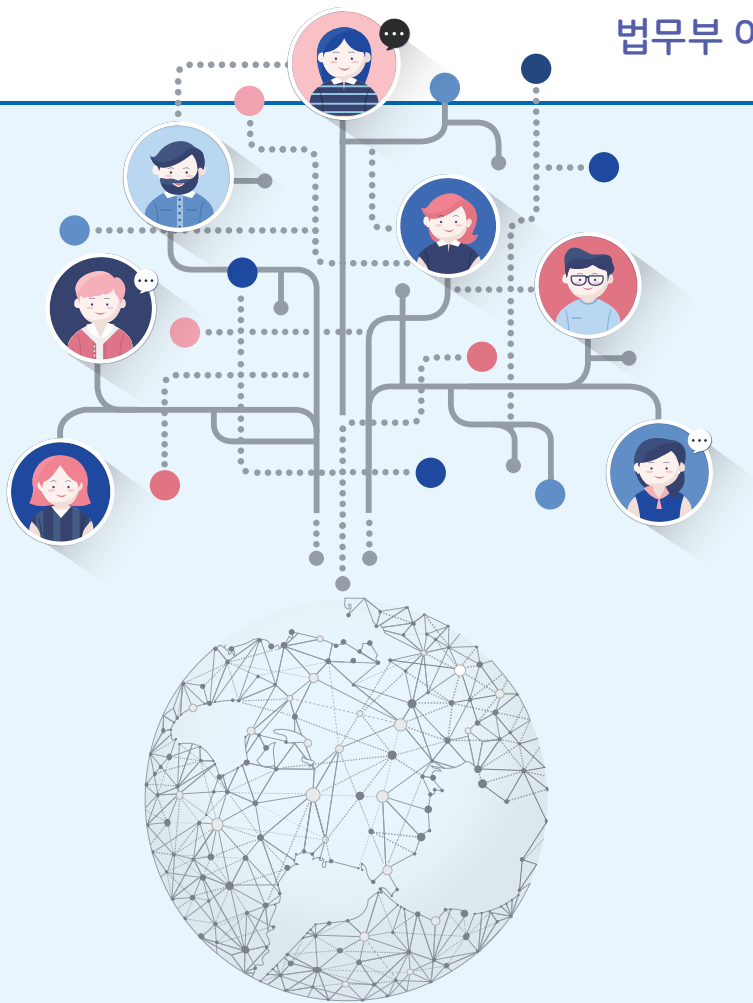


발 간 등 록 번 호

11-1620000-000641-10

2017년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법무부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국가인권위원회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I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모니터링 배경	1
II	현장 모니터링	1
	1. 주요 경과	1
	2. 2017년 모니터링 목적 및 방법	2
	3. 주제 선정 이유	3
	4. 모니터링 결과	5
	5. 평가 및 정책 제언	14
	6. 현장 모니터링 결과 세부 자료	20

I. 모니터링 배경

- 2011. 12. 위원회는 이주민 인권 증진을 위해 7개 분야 90개 핵심추진과제로 구성된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10개 부처에 권고하고, 매년 정부 부처의 이행 실적을 점검하고 해 왔음
 - 2017년은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수립 이후 이주민 관련 법령 및 정책 등의 변화를 고려하여, 이행이 미흡하거나 집중 점검이 필요한 과제, 새로운 이슈를 중심으로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을 재정립하기 위한 실태조사 추진으로 정부이행 실적 점검을 별도로 시행하지 않음
- 또한 위원회는 매년 핵심추진과제와 관련된 주제를 선정하여 사례 발굴과 심층 면접 등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개선 과제를 마련하고 있음
 - 2017년은 법무부 이주민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주제로 현장 모니터링을 진행하였음

II. 현장 모니터링

1. 주요 경과

- 2012년,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권고 후 최초 모니터링으로서, 4개조 20명의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실시 (2012. 5. 12. ~ 10. 15.)
 - 제1조 (이주노동자 및 미등록이주민 인권보호 강화), 제2조 (결혼이주민 및 이주아동 인권보호 강화), 제3조 (난민 및 무국적자 인권보호 강화), 제4조 (인종차별 예방, 외국인에 대한 인식제고 및 TV 프로그램)
- 2013년, 4개조 18명으로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실시(2013. 5. 5. ~ 10. 2.)
 - 2012년 모니터링 분석 결과 TV 프로그램의 인종차별예방 필요성이 제기되어 13명을 배정하고 집중 모니터링 실시
 - 2013년 모니터링 결과 “이주민 관련 TV 프로그램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개선 (이주민 및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이 방영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과

2 2017년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을 각 방송사 및 방송통신심의 위원장에게 권고(2013. 11. 21.)

- 2014년, 4개조 24명으로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실시(2014. 5. 10 ~ 10. 13.)
 - 특히 2013년 모니터링 분석 결과 ‘결혼이주가족’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필요성이 제기되어 19명을 배정하여 실시
- 2015년은 ‘이주아동의 발달권’ 분야에 대해 14명으로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실시(2015. 7. 4 ~ 10. 13.)
- 2016년은 2015년 모니터링 주제의 연장선상에서 ‘학교 밖 이주 아동·청소년의 발달권’ 분야에 대해 10명으로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실시(2016. 5. 11. ~ 10. 18.)
 - 2016년 모니터링결과 난민장애아동이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대상이 되지 않아 활동보조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해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사례를 발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관련 법령 개정을 권고
- 2017년은 법무부 이주민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에 대해 총 17명의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실시(2017. 07. 08 ~ 2017. 10. 20)

2. 2017년 모니터링 목적 및 방법

- 이민자가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데 필요한 기본소양(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 이해, 기타 교육 등)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운영방식과 참여하는 이주민들의 요구사항 등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자 하였음
-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일정기준 이상의 자격요건이 갖춰진 기관의 신청 및 법무부 선정을 통해 별도로 지정된 이주민 지원 단체 및 기관이 전국의 15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관할 아래 위탁수행중이라는 특성을 가지므로, 각 권역 별로 이주 인권 전문가 1~2명씩을 모니터링단으로 구성하여 모니터링 실시

-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한 운영기관과 참여 이주민들의 시각이 다를 것으로 보여, 보다 효과적인 실태를 파악하고자 조사 대상을 각 기관의 운영자와 참여자로 구분하여 설문
- 설문의 세부 내용은 프로그램 참여 과정, 수업 내용 및 진행 방식, 실질적 도움을 위한 연계 서비스 등으로 분류하였음
- 모니터링 방식은 기관에 방문하여 대상자를 대면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 참여를 원하지만, 참여하지 못하는 이주민의 실태 또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실제 참여자 및 위탁 운영자의 불편사항 및 개선 요청사항 중심으로 모니터링하고, 정책개선 과제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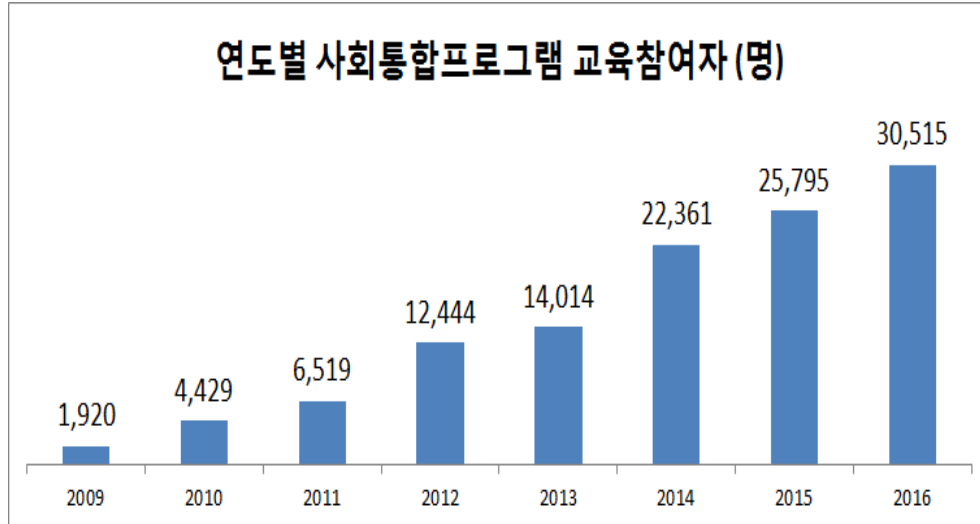
3. 주제 선정 이유

- 2016년 기준 대한민국 내 체류 이주민은 200만 명(전체인구의 약 2.5%)을 넘어섰으며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고, 전문인력·단순 노무 인력·결혼이민자 등 체류 유형도 다원화 추세를 보임
- 법무부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이민자의 국내생활에 필요한 한국어, 문화, 법률 등 기본 소양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 2009년부터 「출입국관리법」 제39조¹⁾에 따라 운영 중인 이민자 사회적응 프로그램임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시 받는 혜택 등의 사유로, 참여자 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이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증대될 것으로 보임²⁾

1) 「출입국관리법」 제39조 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국적,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 자격 등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 정보제공, 상담, 등의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다.

2)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통계

4 2017년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 그러나 해당 프로그램이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의 이해 등으로 제한되어 있고, 이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수요자 중심 프로그램이 부족하며, 이주민에게 일방적인 통합만을 강조하는 교육으로 이주민의 다양성이 무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또한,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범위를 내국민까지 확대하고, 이민자 필수 과정으로 하려는 등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참여를 강화하려는 계획이 있음
- 따라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내용 및 운영방식, 수요자 요구사항 등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이를 개선·반영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함

4. 모니터링 결과

□ 표준설문 주요 내용

(운영자용)

구분	주요 내용
이주민들의 참여 계기, 경로 및 과정	참여자가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로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참여자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과정
프로그램 운영 및 수업	수업 내용 수업 진행 수업 참여 방식 강사의 관리 및 수업 태도 어려움과 개선점
단계 승급의 방식, 효과 및 목적	단계 배정의 기준과 적용 단계 승급 방식의 효과 단계별 학습에 대한 적절성
실질적 도움 제공 가능성	상담, 고충 해결 등 연계 서비스 사회통합프로그램 내에서의 의사소통 체계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어려움 및 개선사항

(참여자용)

구분	주요 내용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 계기 및 경로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해 알게 된 경로 및 목적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과정 및 어려움
수업에 대한 효과 및 만족여부	수업 및 교재 내용 수업 진행 강사의 수업 태도 및 만족도 개인 학습
단계 승급의 방식, 효과 및 만족도	단계 배정의 만족도 자동 승급에 대한 본인 경험
실제 일상과의 연관성	상담, 고충 해결 경험과 해당 연계 서비스 사회통합프로그램과 관련된 의사소통 기타

□ 모니터링 결과 주요 지표

1) 이주민들의 프로그램 참여 경로, 목적 및 신청 과정

- 이주민이 프로그램에 대해 알게 되는 경로
 - 참여자는 입국 후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를 받았는지 묻는 문항에서 84%가 그렇다고 응답했으나, 그 주체로 ‘아는 사람’을 48%, ‘한국어 교육 단체’와 ‘이주민 지원 단체’를 각각 19%, 11%로 응답. 이에 반해 ‘출입국관리 사무소 직원 등’ 공공기관을 통해 알게 됐다는 응답은 9%로 나타남
 - 운영자는 이주민이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해 알게 되는 가장 큰 경로로 ‘SNS 및 지인의 추천’(47%)을 응답. 또한, 운영자는 프로그램에 대한 실질적인 홍보 방법으로 ‘운영기관의 협조’를 1순위(60%)로 응답. 2순위로 ‘홈페이지 및 SNS’(24%), 3순위로 ‘리플릿 및 홍보자료’(10%)를 응답
 - 참여자는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계기를 묻는 문항에서 77%가 이수 시 받게 되는 혜택을 응답했고, 한국어 습득이 41%, 기본적인 소양 습득이 28%로 응답(복수응답 문항). 또한, 참여자는 목표로 하는 단계가 있는지 묻는 문항에서 94%가 5단계 기본과정 이상까지 참여하고자 한다고 응답. 해당 단계까지 참여하고자 하는 이유로는 50%가 ‘원하는 체류자격 혜택 때문’, 43%는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공부’라고 응답
- 이주민의 프로그램 참여 신청 과정
 - 참여자는 사회통합정보망 홈페이지의 언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구성되어 있었는지에 대해 42%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 또한, 운영자는 프로그램 홍보에 개선이 필요하다면 어떤 방향이어야 할지 묻는 문항에서 25%가 ‘다국어 지원 확대’를 응답
 - 참여자는 프로그램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는지에 대해 묻는 문항에 대해 47%가 그렇다고 응답. 그 이유로 ‘내용을 이해했지만 신청하는 방법이 너무 어려웠다’가 52%로 가장 많았고 ‘홈페이지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다’가

32%로 두 번째로 많은 응답을 보임. 또한, 이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묻는 문항에서 ‘혼자 해결했다’는 응답은 18%, 주변인 또는 이주민 지원 단체의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이 70%

- 운영자는 참여자가 참여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는지에 대해 72%가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그 어려움으로 ‘컴퓨터 사용 및 인터넷 활용 미숙’이 67%, ‘신청절차의 복잡함’이 31%, ‘노동으로 인한 시간부족’ 28%, 신청자의 모국어 번역 미지원’을 26%로 응답(복수응답 문항), 또한 이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묻는 문항에서 84%가 기관이나 지인의 보조 혹은 대리신청으로 해결했다고 응답
- 참여자는 주변에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지만 참여하지 못하는 이주민이 있는지 묻는 문항에서 45%가 있다고 응답. 그 이유로 ‘시간이 맞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50%, ‘수업장소가 멀어서’라는 응답이 14%, ‘신청하는 법을 몰라서’가 13%, ‘사장(혹은 남편 등)이 허락해주지 않아서’가 13%로 나타남
- 운영자는 주변에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지만 참여하지 못하는 이주민이 있는지 묻는 문항에서 81%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그 이유로 ‘노동으로 인한 시간부족’과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할 시간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각각 46%, 45%로 나타났고 ‘신청 시기를 놓쳐서’라는 응답이 45%, ‘운영기관과의 이동거리가 너무 멀어서’라는 응답이 27%로 나타남(복수응답 문항)

2) 수업 내용 및 방식

○ 교재 내용

- 참여자는 교재 내용 중 차별적이거나 불편한 내용이 있는지에 대한 문항에서도 9%가 그렇다고 응답
- 참여자는 프로그램 수업이 자신이 태어난 국가에서 갖게 된 가치관, 정서를

8 2017년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보존,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는지 묻는 문항에서 29%가 아니라는 응답을 보임

- 운영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수업의 난이도와 관련하여 32%가 어렵게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음, 그 이유로 언어가 어렵다는 의견이 28%, 한국 문화, 사회가 어렵게 구성되어 있다는 의견이 30%, 수업시간과 내용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12%로 나타남
- 운영자는 교재 내용 중 참여자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묻는 문항에서 현대 한국문화와 한국어가 적절히 반영되었다는 의견이 각각 48%와 45%로 높게 나타남. 반면 무엇이 부족한지 묻는 문항에서 직장 내 차별, 비하에 대한 대응책이 소개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56%로 나타남

○ 수업 운영 및 방식

- 참여자는 수업시간 사이에 식사시간이 있는지 묻는 문항에서 55%가 있다는 응답을 보임. 식사시간이 있다면 얼마나 있는지 묻는 문항에서 46%가 50분 이상을 응답하고 33%가 30분 이하를 응답. 식사시간이 없다는 45% 중 수업시간이 식사시간과 관계없다는 응답 55%를 제외하면 45%가 쉬는 시간에 간단히 먹거나 먹지 않는다고 응답
- 참여자는 운영기관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묻는 문항에서 56%가 30분 이내를 응답했으나, 24%는 45분 이상을 응답
- 참여자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화상교육에 대해 알고 있는지 묻는 문항에서 알고 있다는 응답이 33%로 나타남. 화상교육에 참여하고 싶은 이유로 '시간 조정이 힘들다'가 32%, '특정 강사의 수업을 듣기가 힘들다'가 16%로 나타남
- 참여자는 수업 중 특정 종교에 대한 강조나 강요가 있었는지 묻는 문항에서 90%이상이 없다고 응답했으나 소수의 '신앙 강요', '종교행사 참여 강요' 등의 응답이 있음

- 운영자는 프로그램이 이주민에게 적절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지 묻는 문항에서 31%가 아니라고 응답했으며, 이중 36%는 학습 환경 개선을 위해 '체류목적별 다양화된 수업이 진행 필요'. 32%가 '반 개설 조건 완화'라고 응답했으며, '공지 및 안내 다국어지원 필요'로 응답한 비율이 18%로 나타남

○ 강사

- 참여자는 강사가 수업 중 차별적인 언행을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문항에서 8%가 그렇다고 응답
- 운영자는 강사가 참여자의 특성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문항에서 96%가 '매우 그렇다' 혹은 '그렇다'고 응답.
- 강사의 전문성 유지 및 향상이 재교육을 통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3%로 나타났고, 이와 관련하여 어떤 개선이 필요한지 묻는 문항에 57%가 보수교육의 대상과 내용³⁾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응답했고, 강사의 자격 획득 조건을 강화해야한다는 의견이 27%로 나타남
- 운영자는 강사의 전문성(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다문화 및 인권 감수성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고 있는지에 대한 문항에서 51%가 그렇다고 응답. 어떤 환경이 제공되는지 묻는 문항에서 44%가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 보수교육 등 교육프로그램 참여, 32%가 간담회 등 자체 환경 제공, 17%가 강사 개인의 자체 해결이라고 응답

○ 참여자의 개인학습과 지원

- 참여자에게 수업시간을 제외하고 스스로 공부하고 있는지 묻는 문항에서 57%가 '매우 그렇다' 혹은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공부 시간으로는 1시간 미만이 20%, 1~2시간이 31%, 2~4시간이 18%, 4시간 이상이 33%로 나타남.

3) 법무부는 위탁 기관과 연계하여 매년 다문화사회전문가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신청자를 받아 15시간의 보수교육을 진행하고 있음.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강사들 중 '한국 사회의 이해(5단계)' 과정의 강사로 등록된 사람은 보수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함. 그 외 연간 3회의 보수교육이 진행되나 필수사항이 아님.

10 2017년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공부를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참여자 중 왜 하지 않는지 묻는 문항에서 72%가 '시간이 없다'고 응답했고, 8%가 '장소가 없다', 8%가 '공부하지 않아도 문제 없다'라고 응답

- 참여자 중 40%가 운영기관이나 다른 단체가 개인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다고 응답했으며, 그 장소로 57%가 강의실이라고 응답. 또한 개인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60%는 별도의 장소가 필요한지 묻는 문항에서 55%가 필요하다고 응답

○ 운영상의 어려움과 개선점

- 운영자는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가장 어려운 부분을 묻는 문항에서 53%가 '인력이나 예산 지원이 부족하다'고 응답했으며, '운영지침상의 제약이 많다' (24%), '이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렵다'는 응답(15%)이 뒤를 이음
- 운영자는 정부차원의 개선이나 지원 확대가 필요한지 묻는 문항에서 93%가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어떤 부분의 지원이 시급한지에 대해 37%가 '개선 건의 및 요청사항 수렴제도', 30%가 '상담 및 지원 인력의 확충'을, 6%가 '운영기관의 숫자 확대'를 응답

3) 단계승급의 방식, 효과

○ 단계 배정의 기준과 적용

- 운영자는 참여자가 각 단계별 이수시 주어지는 혜택을 받을만한 수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문항에서 34%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
- 운영자는 이주민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단계로 3단계(22%), 4단계(35%), 5단계 기본과정(25%)이라고 응답했으며, 그 이유로 3단계와 2단계의 난이도 차가 너무 크다는 의견이 많았고, 4단계에서의 어휘, 문법 등 난이도 상승, 5단계 기본과정의 경우 시간에 비해 내용이 너무 많다는 응답이 주류
- 운영자는 자동승급제도가 참여자의 학습의지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고 생각

하는지 묻는 문항에서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28%에 불과. 또한 단계별 이수 제도가 어떤 부분에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문항에서 70%가 반복 수료시 자동으로 승급하는 제도의 폐지 또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응답

4) 실질적 도움 제공 가능성 및 실제 일상과의 연관성

○ 상담, 고충해결 등의 연계서비스

- 참여자는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대처법을 아는지 묻는 문항에서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39%로 나타남
- 참여자는 최근 부당한 일을 당한 적이 있는지 묻는 문항에서 15%가 그렇다고 응답. 이에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대한 문항에 60%가 공공기관, 단체, 지인의 도움으로 해결했다고 했으며, ‘혼자 해결했다’는 응답이 12%, ‘그냥 넘어갔다’는 응답이 28%에 달함
- 참여자는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고충이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운영기관에서 상담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39%가 그런 적이 있다고 응답. 상담 내용으로는 체류 관련 상담이 44%, 공공복지 관련 상담과 가정 관련 상담이 각각 20%, 직업 관련 상담이 13%로 나타남. 상담을 받지 않은 61% 중 상담을 받고자 한다면 어떤 상담을 받고 싶은지 묻는 문항에서 38%가 직업관련 상담, 36%가 체류 관련 상담, 17%가 공공복지 관련 상담을 원한다고 나타남
- 운영자는 상담, 고충 해결 등의 연계서비스 체계가 확보되어 있는지 묻는 문항에서 66%가 확보되어 있다고 응답. 이에 어떤 형태의 체계인지 묻는 문항에서 62%가 기관에서 자력으로 제공한다고 응답했으며, 26%은 관련성이 있는 타기관과 연결, 10%는 상위운영기관과 연계하여 도움을 제공한다고 응답
- 운영자는 전문인력이 충원된다면 가장 시급한 업무가 무엇인지 묻는 문항에서 52%가 참여자 관리, 홍보 등의 행정인력 충원을 응답했고, 36%가 상담, 문제 해결 등 서비스 담당인력 충원을 응답

12 2017년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 사회통합프로그램 내에서의 의사소통 체계 및 개선점
 - 참여자는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요청이나 개선 건의를 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에서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58%로 응답. 요청 가능하다는 42%의 응답자는 요청 방법으로 76%가 운영기관 담당자에게 말한다고 응답
 - 참여자는 사회통합프로그램에 필요한 개선점으로 수업시간 및 방식과 관련된 개선 요청이 54%, 학습장소 및 시설과 관련된 요청이 32%, 프로그램 안내와 혜택에 관련된 요청이 14%로 나타남
 - 운영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참여자의 의견 개진 체계가 있는지 묻는 문항에서 40%가 그렇다고 응답
 - 운영자는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정부의 지원이나 개선을 요청할만한 체계가 있는지 묻는 문항에서도 그렇다는 응답은 27%로 응답. 또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지 묻는 문항에서 그렇다는 응답은 41%로 나타남
 - 운영자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시설기반을 확보,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는지 묻는 문항에서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33%로 나타남
 - 운영자는 연계서비스 확보, 확대에 대해 필요성을 인지하느냐는 문항에 56%가 그렇다고 응답. 그 과정에서 필요한 개선이나 지원으로 27%는 프로그램 내용 조정을, 24%가 인력 및 예산 지원을 응답했으며, 기관 및 시설 확대와 일반운영기관 권한 확대가 각각 15%로 나타남

□ 특이 사례

- 지하에 위치하며 모기가 많고 냄새도 나는 열악한 환경에서 수업을 받기에 힘들다는 참여자(서울)
- 임신으로 병원에 입원해야할 일이 있었는데 수업이 20시간 참석 하지 않으면 시험을 칠 수 없다는 말에 병가를 내지 못한 참여자(서울)

- 강사가 수업시간의 20~25%는 반말로 진행하기에 꺼려진다는 참여자(서울)
- 시간적 이유로 화상교육에 참여하고자 하였으나 화상교육에 참여하기 위한 요구조건이 까다로워서 하지 못한 참여자(서울)
- 2시간 수업 후 10분의 휴식시간을 갖는 수업방식이 힘들다는 참여자(경기)
- 거주지 근처에는 자신이 속한 단계의 반이 개설되지 않아 왕복 2시간이 넘는 거리를 이동하는 참여자(경기)
- 강사에 대한 보수교육이 이루어지나, 거점에서 전달을 잘 해주지 않아 스스로 정보를 찾아 보수교육을 받고 있는 운영자(서울)
- 5단계 심화과정까지 이수했으나, 보장되었던 혜택인 면접제외를 받지 못한 사례를 목격한 운영자(광주)
- 거점운영기관 전담인력으로서 지급받는 보수는 170만원이나 사업자부담금도 자체 부담하기에 실 수령액은 129만원에 불과하고, 운영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더 이상 일을 할 수도 없어 고용안정성이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다는 운영자(서울)
- 직장에서 참여자의 일요일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를 허락하지 않아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참여자의 사례를 목격한 운영자(경기)
- 최소 개설인원 제한 때문에 수업이 개설되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경험한 운영자(강원)
- 시간만 채우면 승급되는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단계에 맞는 실력을 기대하기 어렵고 사회통합프로그램이 이용수단이 되는 느낌을 받았다는 운영자(경기)
- 특정 거점운영기관의 경우 예산을 비공개적으로 독점하여 운영하는 등 상위기관과의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운영자(경기)
-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할 뿐인데 이민자를 위한 상담과 문제해결까지 일반운영기관이 무료로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운영자(경기)
- 참여자의 상황을 고려해 셔틀버스운행, 자원봉사자 활용, 간식 및 식사제공 등의 지원을 자체 예산으로 제공하고 있는 운영기관(경기)

5. 평가 및 정책 제언

□ 총평

○ 이주민들의 프로그램 참여 경로, 목적 및 신청 과정

이주민이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는 경로와 신청과정은 매우 제한되어 있고, 참여하는 이주민들의 범위도 좁음.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알게 되는 경로로 주변 지인이 절반에 달하고, 참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도 운영기관을 포함한 주변의 도움 없이는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참여하게 되는 계기 또한 대다수가 국적, 영주권 등 이수시 부여되는 체류자격 관련 혜택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참여하지 못하는 이주민들의 경우 일정 조율의 어려움과 교육장소와의 거리 때문이라고 응답함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한 초기 접근이 어려운 이유로는 제대로 된 홍보 부족, 사회통합정보망 홈페이지의 복잡성 및 다국어 지원 미비 등 참여자의 자율적 참여를 위한 체계 부족을 꼽을 수 있음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홍보는 운영기관의 자체적인 홍보나 주변 지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이로 인해 이주민들이 우리사회에 대한 적응 및 정착을 돕는다는 취지를 가진 프로그램임에도 프로그램 본래 목적보다는 혜택이 먼저 홍보되어 이주민들에게 느껴지는 실질적 의미가 체류자격 혜택 제공에 불과한 모습임

또한 사회통합정보망 홈페이지는 한국어로 많은 양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다양한 국적의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다국어지원이 부족함

따라서 운영기관의 자체적인 재공지 및 지원을 강제하는 상황임. 프로그램 신청 과정에서도 다국어 지원 미비는 공통적인 문제이며, 대다수의 이주민이 주변의 보조 및 대리신청을 통해 참여한다는 점은 외국인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해 민감한 개인정보가 보호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의미함

이러한 초기 진입 과정의 문제점들은 이주민 스스로가 참여해야하는 사회 통합프로그램의 상당 부분에서 운영기관 담당자 등에게 의존하는 것을 익숙하게 함. 본인이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언제, 어떻게 이수할 것인지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고 이행할 수 있는 자율성 보장이 부족함

○ 수업 내용 및 방식

수업과정에서도 일부 문제가 발견됨. 이중 언어가 되지 않는 강사가 교재 중심의 강의식 수업을 진행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취지와 맞지 않는 단순 지식 전달 방식 위주로 운영되고 있음. 이주민의 사회적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사례 중심 교육내용과 참여자 친화 프로그램 적용 등 내용 및 방식의 변화가 필요함

○ 단계승급의 방식, 효과

사회통합프로그램은 단계별 이수를 통해 이주민이 한국어와 한국사회·문화 등의 지식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각 단계별로 난이도 분배에 문제가 있다는 응답이 다수였음. 지속적인 평가에 대한 부담, 참여자의 학습의지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자동승급제도 역시 참여자와 운영자 모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음. 난이도 조절의 경우, 초급에서 중급(3단계 -> 4단계)로 넘어가는 과정과 5단계(기본, 심화)가 가장 많이 지적된 단계였음. 4단계와 5단계 모두 어휘의 난이도가 지나치게 상승했다는 지적이, 5단계의 경우 각각 50시간과 20시간에 익히기에는 분량이 너무 많다는 의견이 있음.

위 설문 결과에 따른 전문가 의견은 불필요하게 많은 단계와 실생활에서 잘 쓰이지 않는 수준의 한국어가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있는 이유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또한 현행 단계는 0단계와 5단계 기본과정, 5단계 심화과정을 모두 포함하여 총 7개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고, 각 단계별로 한국어 및 한국 문화에 대한 목표 수준이 지정되어 있고, 각 단계별로 승급시험을 치러 합격해야만 다음 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데, 합격하지 못한 경우는 1회 또는 2회의 재이수를 통해 자동으로 다음 단계에 진입하게 되면서 각 단계의 난이도 및 교육 시간 대비 분량의 조절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단계별 난이도 조절이 잘 안된 경우 일부 참여자에게 실망 혹은 좌절을 유도하게 될 우려가 있으며, 반복수료 시 일정 수준의 도달 여부와 관계 등 다른 조건 없이 자동으로 승급하는 현행 제도가 더해진다면 실질적으로 수준의 향상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결국, 지속적인 학습과 수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되는 단계별 학습 방식은 해당 목적을 다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짐

○ 단일화된 프로그램 내용

참여자의 의견개진이나 요구사항 전달 방식, 전반적인 진행방식으로 볼 때 수요보다는 공급자 중심의 형태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음. 참여자가 다양한 환경에 있는 것에 비해 프로그램은 이를 포괄할 만한 내용이 부족하다는 반응이 있음. 여러 배경과 생활상을 갖고 있는 이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화된 프로그램이 필요

○ 화상교육의 제한적 시행⁴⁾, 강좌 개설 조건의 까다로움

다수의 참여자는 시간, 거리상의 이유로 화상교육을 희망했음. 그러나 화상교육 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신청 가능 인원도 적어 신청하지 못했다는 사례와 응답을 얻음. 반대로 운영자들은 강의 신청인원이 적어 강좌개설을 하지 못한다는 응답을 보였는데 두 응답은 서로 상충되는 것임. 사회통합 프로그램 수요 인구가 적은 지역에 있는 이주민과 참여시간 및 교육장소와의 거리 등 여건이 어려운 이주민들은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의 사각지대에 남게 될 우려가 있음

4)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현행 운영지침은 화상교육의 대상자를 ‘원거리 거주(격오지), 임신, 출산, 거동불편, 취업 등으로 집합교육이 어려운 참여자’로 지정했음. 그러나 실제로 화상교육에 참여한 이주민은 최근 3년(2014년~2016년) 동안 평균 800여명으로서 전체 참여자의 3%에 불과함.

- 상담, 고충 해결 등의 연계서비스 체계 지원 미비
 이주민들은 언어, 문화, 사회적 관념 등의 이유로 취약한 상태에 있음. 이 점으로 보아 주변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됨. 이에 다수의 운영기관들이 지원 체계를 갖고 있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응답을 보임. 그러나 대다수가 법무부의 지원 없이 운영기관 자체 역량이나 유관 단체들과의 연계를 통해 해소하고 있다는 답변이었음

- 강사의 전문성 제고 노력의 부족
 대부분의 운영자들은 강사가 전문성을 갖고 있고, 지속적으로 향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응답을 보였으나, 이를 위한 방법으로 간단한 간담회나 강사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한다는 응답이 많음. 이는 결국 전문성 제고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 운영기관의 과도한 부담
 사회통합프로그램은 법무부에서 선정한 거점운영기관 및 일반운영기관이 수업을 맡아 진행하는 형태임. 이 과정에서 참여자에 대한 관리, 정보제공, 상담과 고충해결 등 넓은 범위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수요를 자력으로 해결하고 있는 실정. 국가적 차원에서 개발·진행되는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운영과 부담은 운영기관이 맡고 있음.

- 운영자의 열악한 고용 환경
 운영기관을 1년 단위로 선정(2018년부터 2년 단위로 변경)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 제한적인 예산지원 때문에 운영기관 근로자의 고용의 질과 안정성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남. 이점은 각 운영기관의 프로그램 담당자와 강사, 거점운영기관의 전담인력 등 폭넓은 업무분야에서 발견됨. 특히 거점기관의 경우 전담인력이 매년 교체되거나 재계약을 해야 한다는 사례가 있음. 이러한 고용환경은 운영자측의 전문성 부족을 야기하게 되고 참여자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정책 제언

- 모니터링 결과 파악된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주민의 우리사회 적응을 돕는다는 본래 취지에 맞는 프로그램이 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정책 개선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 내용의 마련
공급자 중심으로 운영·제공되는 현행 체계를 지양하고 수요자의 필요와 요구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특히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 공지 신청 과정 등에서 참여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
 - 단계별 학습구조 및 자동승급 제도의 개선
단계별 학습은 여러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각 단계별 난이도 분배, 내용의 분배, 시간조절, 교재 내용 및 양의 조절 등에 대한 논의와 개선이 있어야 함
자동승급 제도의 경우 참여자의 학습의지와 수업 분위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형식적인 단계 이수가 아닌 실질적 단계 이수가 될 수 있도록 교육 시스템보완이 필요함
 - 운영자의 고용안정성 확보
프로그램 운영기관 인력의 고용안정성과 질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프로그램 운영과 전문성 향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함. 특히 거점기관 전담인력의 경우 운영기관 선정 여부 및 계약기간에 따라 1~2년마다 교체 혹은 재계약을 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물론, 연속적인 업무 진행을 방해하고 참여 이주민들에게도 질 높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어려울 것임
 - 운영기관에 대한 인력, 예산의 지원 및 범위 확대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인력이나 예산의 지원이 부족하여 개인의 업무량이 과다한 것으로 나타남. 필요한 범위를 파악하여 인력(실무자, 강사, 지원 인력 등)에 대한 증원과 예산의 적절한 지원이 필요함

- 상담, 고충해결 등의 연계서비스에 대한 지원
 운영기관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 선별되어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참여자의 수요와 필요에 의해 상담 및 고충해결 등 부가적인 연계서비스가 요구되고 있으며, 다수의 경우 이를 운영기관 자체적으로 제공하고 있음. 이에 대해 공식적인 지원이 필요함

- 강사의 전문성 유지 및 향상을 위한 대안 마련
 강사는 참여자와 자주 접하고 직접 강의를 하는 등 여러 부분에서 전문성이 요구되나 5단계 강사만 보수교육의 대상이 되는 등 강사의 전문성에 대한 관리가 미흡함. 이는 향후 부적절한 학습 환경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보수교육의 필수 대상을 5단계 강사에서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고, 교육 내용과 횟수 또한 보장되어 강사의 전문성 관리 지원이 필요함

- 화상교육 범위 확대 및 강좌 개설 조건 완화
 화상교육이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반 개설 최소 인원 제한이 있어 프로그램 참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화상교육 대상자의 범위 및 참여가능인원을 늘리고 반 개설 조건도 완화하여, 프로그램의 사각지대에 놓이거나 과하게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경우를 없애야 함

- 운영기관 및 참여자가 프로그램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소통 체계 확보
 프로그램의 실질적 당사자인 운영자와 참여자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경로가 활성화되지 않아,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운영자 및 참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임

6. 현장 모니터링 결과 세부 자료

○ 기본 정보

구분	단위
활동 모니터링단원	17명
방문 기관	53기관
운영자(행정담당, 강사, 기관장 등) 응답	146명
참여자 응답	177명

○ 운영자 기본정보

구분	분류 기준	분포
직위 분포	책임자 및 대표	37명(25%)
	실무자	47명(32%)
	강사	61명(42%)
	무응답 및 기타	1명(1%)
주요 업무 분포	기관, 사업 총괄 업무	29명(20%)
	행정 및 지원 업무	44명(30%)
	수업 강의 업무	65명(45%)
	무응답 및 기타	8명(5%)
관련 분야 경력기간	5년 미만	48명(33%)
	5년 이상 ~ 10년 미만	57명(39%)
	10년 이상	39명(27%)
	무응답 및 기타	2명(1%)

구분	분류 기준	분포
성별 분포	남	19명(13%)
	여	126명(86%)
	무응답	1명(1%)
연령 분포	20대 이하	18명(12%)
	30대	20명(14%)
	40대	47명(32%)
	50대	43명(29%)
	60대 이상	12명(8%)
	무응답	6명(4%)
소속 기관 유형 분포	교육기관	22명(15%)
	다문화가족지원센터	49명(34%)
	기타 이주민 지원 단체	74명(51%)
	무응답 및 기타	1명(1%)
활동지역 분포	서울, 경기	49명(34%)
	경상	30명(21%)
	전라	37명(25%)
	강원	9명(6%)
	충청	8명(5%)
	제주	9명(6%)
	무응답 및 기타	4명(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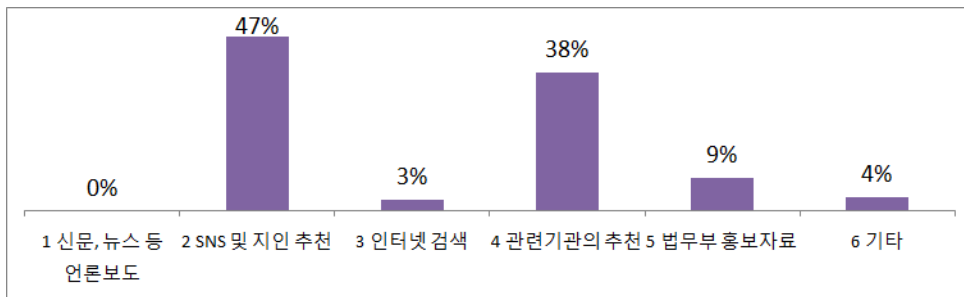
22 2017년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 운영자(행정, 강사, 기관장 등) 항목별 세부

1) 이주민들의 참여 계기, 경로 및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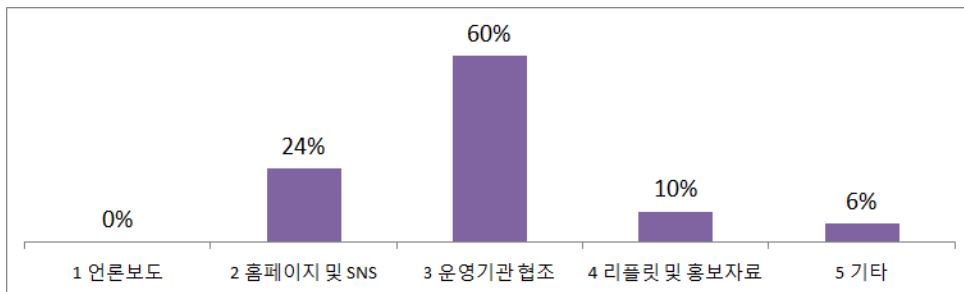
이주민들이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해 알게 되는 가장 큰 경로

응답 항목 구분	단위(명)
1 신문, 뉴스 등 언론보도	0
2 SNS 및 지인 추천	64
3 인터넷 검색	4
4 관련 기관의 추천	51
5 법무부 홍보자료	12
6 기타	5
무효응답	10
응답자 수	1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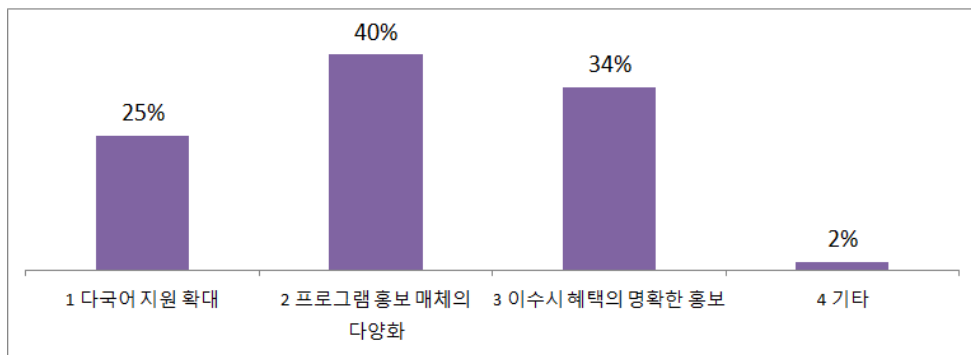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한 실질적 홍보는 어떤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는지

응답 항목 구분	단위(명)
1 언론보도	0
2 홈페이지 및 SNS	31
3 운영기관 협조	79
4 리플릿 및 홍보자료	13
5 기타	8
무효응답	15
응답자 수	1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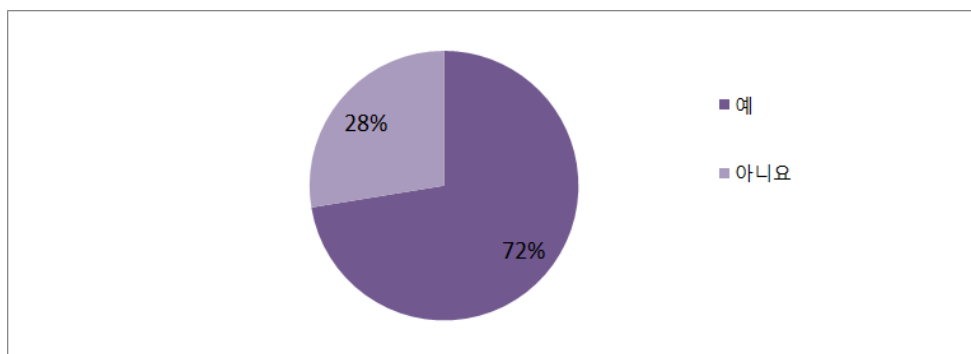
홍보에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면 어떤 방향이어야 할지

응답 항목 구분	단위(명)
1 다국어 지원 확대	33
2 프로그램 홍보 매체의 다양화	53
3 이수시 혜택의 명확한 홍보	45
4 기타	2
무효응답	8
응답자 수	141



이주민들이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과정에 있어 어려움이 있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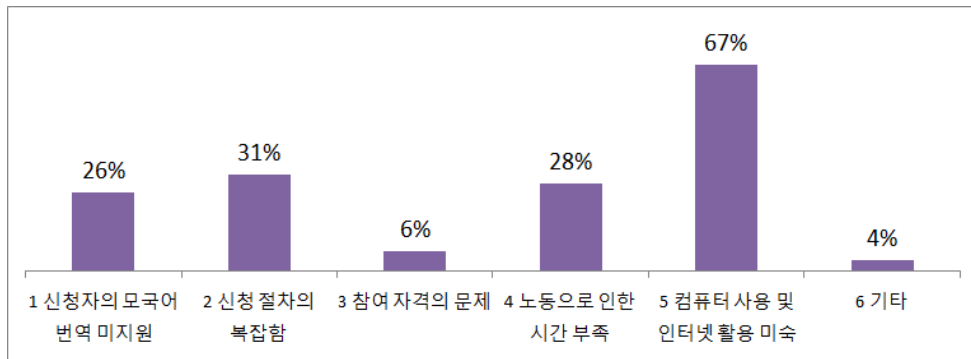
응답 항목 구분	단위(명)
예	105
아니요	40
무효응답	0
응답자 수	145



24 2017년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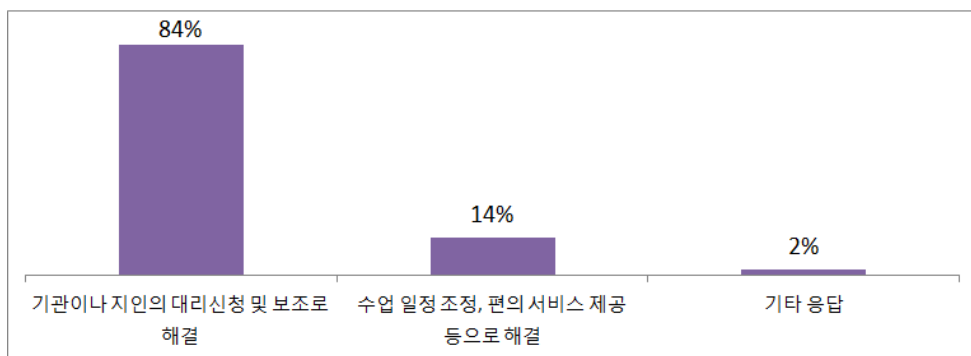
(예)를 응답한 경우,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었는지 (복수응답 가능)

응답 항목 구분	단위(명)
1 신청절차의 모국어 번역 미지원	28
2 신청 절차의 복잡함	34
3 참여 자격의 문제	7
4 노동으로 인한 시간 부족	31
5 컴퓨터 사용 및 인터넷 활용 미숙	73
6 기타	4
응답 수	177
응답자 수	1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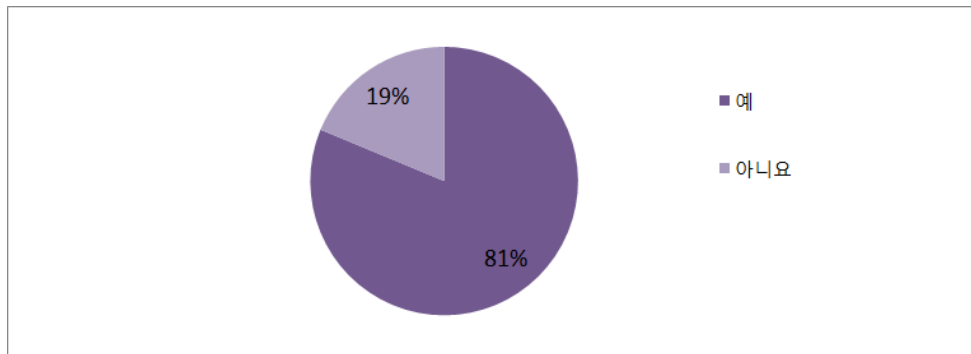
(예)를 응답한 경우, 해당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서술응답)

응답 분류	단위(명)
기관이나 지인의 대리신청 및 보조로 해결	80
수업 일정 조정, 편의 서비스 제공 등으로 해결	13
기타 응답	2
무효응답	4
응답자 수	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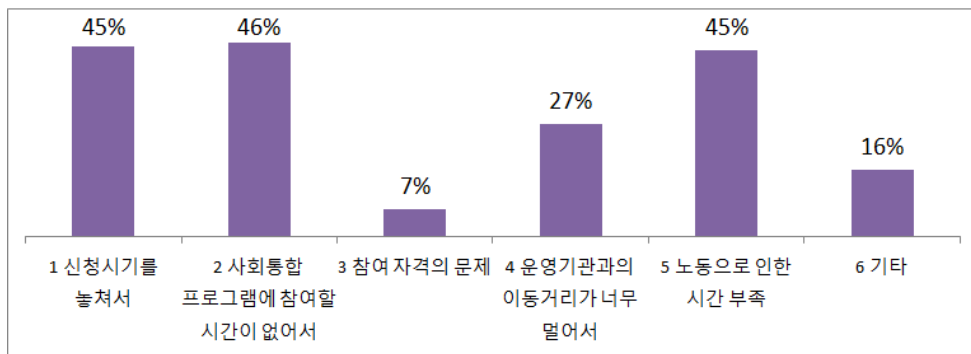
주변에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참여를 희망하나, 참여하지 못하는 이주민들이 있는지

응답 항목 구분	단위(명)
예	117
아니요	27
무효응답	1
응답자 수	145



(예)를 응답한 경우, 어떤 이유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지 (복수응답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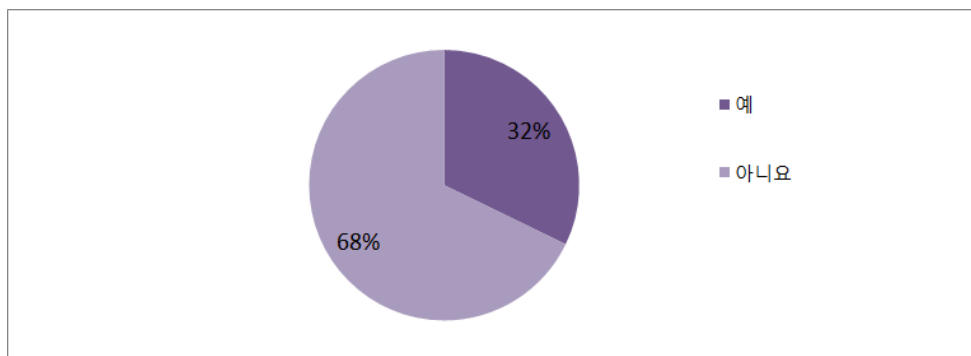
응답 항목 구분	단위(명)
1 신청 시기를 놓쳐서	54
2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할 시간이 없어서	55
3 참여자격의 문제	8
4 운영기관과의 이동거리가 너무 멀어서	32
5 노동으로 인한 시간 부족	53
6 기타	19
응답 수	221
응답자 수	119



2)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및 수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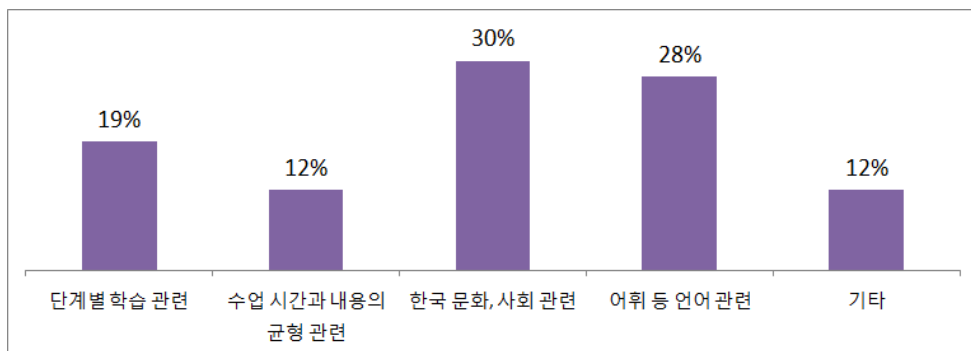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수업이 이주민들에게 어렵게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는지

응답 항목 구분	단위(명)
예	47
아니요	99
무효응답	0
응답자 수	1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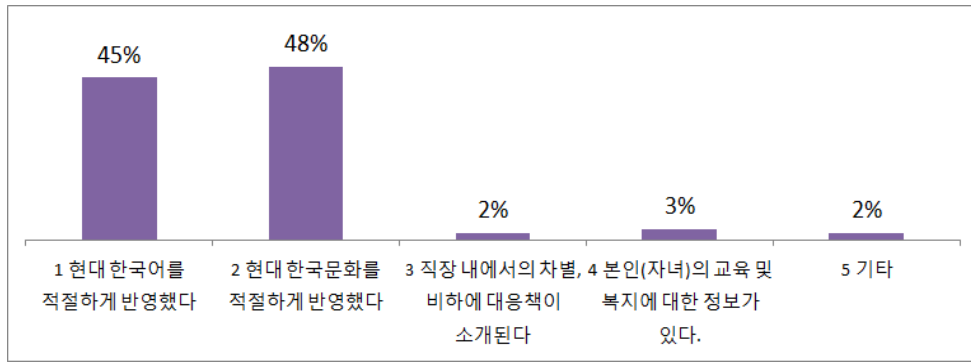
(예)를 응답한 경우, 이주민들이 어떤 내용을 어려워하는지 (서술응답)

응답 분류	단위(명)
단계별 학습	8
수업 시간과 내용의 균형	5
한국 문화, 사회	13
어휘 등 언어	12
기타	5
무효응답	6
응답자 수	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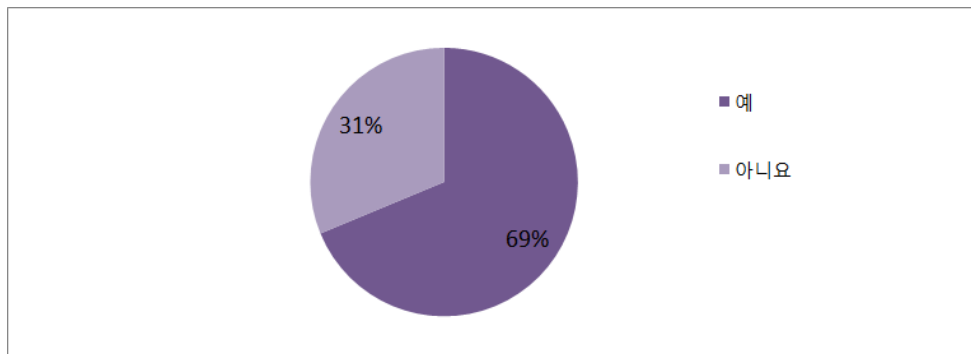
수업에 사용되는 교재 중 어떤 부분이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응답 항목 구분	단위(명)
1 현대 한국어를 적절하게 반영했다	46
2 현대 한국문화를 적절하게 반영했다	49
3 직장 내 차별, 비하에 대한 대응책이 소개된다	2
4 본인(자녀)의 교육 및 복지에 대한 정보가 있다	3
5 기타	2
무효응답	16
응답자 수	118



이주민의 체류목적, 생활환경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합프로그램이 적절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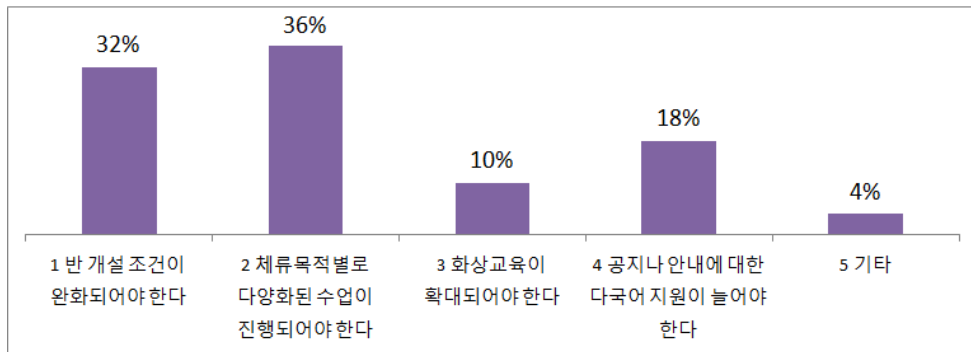
응답 항목 구분	단위(명)
예	99
아니요	45
무효응답	1
응답자 수	99



28 2017년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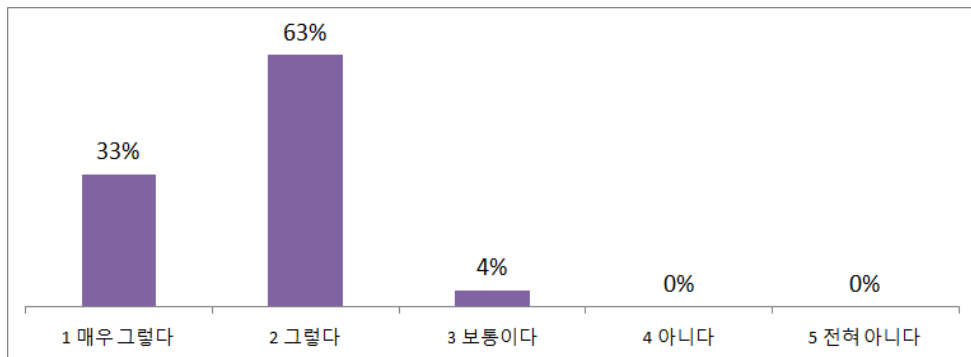
(아니요)를 응답한 경우, 어떤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한지

응답 항목 구분	단위(명)
1 반 개설 조건이 완화되어야 한다	16
2 체류목적별로 다양화된 수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18
3 화상교육이 확대되어야 한다	5
4 공지나 안내에 대한 다국어 지원이 늘어야 한다	9
5 기타	2
무효응답	2
응답자 수	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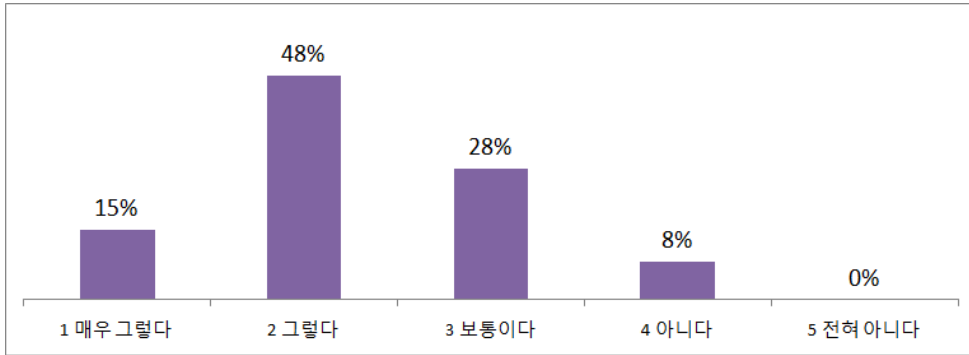
수업을 진행하는 강사는 참여자의 특성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지

응답 항목 구분	단위(명)
1 매우 그렇다	48
2 그렇다	91
3 보통이다	6
4 아니다	0
5 전혀 아니다	0
무효응답	0
응답자 수	1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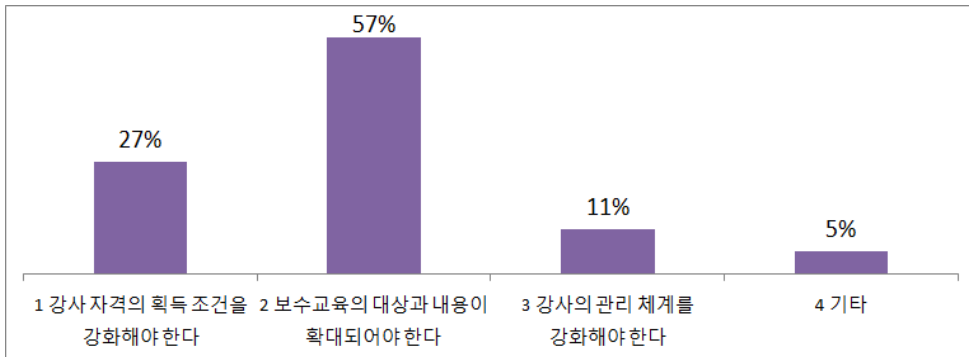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의 전문성을 유지, 향상이 재교육, 보수교육 등을 통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응답 항목 구분	단위(명)
1 매우 그렇다	22
2 그렇다	70
3 보통이다	41
4 아니다	12
5 전혀 아니다	0
무효응답	0
응답자 수	145



(아니다, 전혀 아니다)를 응답한 경우,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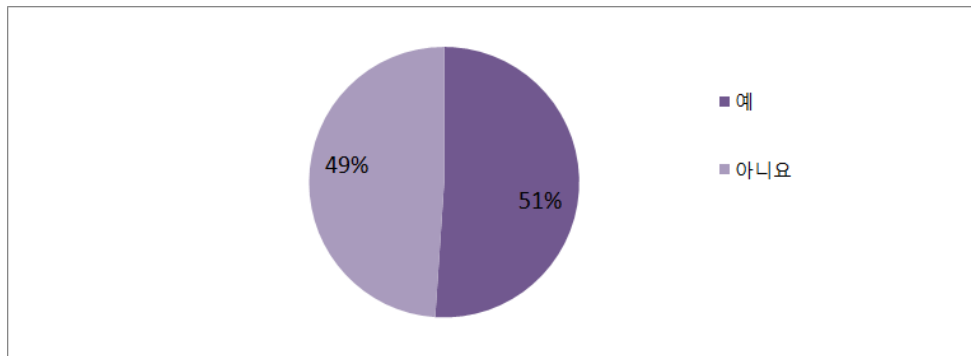
응답 항목 구분	단위(명)
1 강사 자격의 획득 조건을 강화해야 한다	10
2 보수교육의 대상과 내용이 확대되어야 한다	21
3 강사의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4
4 기타	2
무효응답	4
응답자 수	41



30 2017년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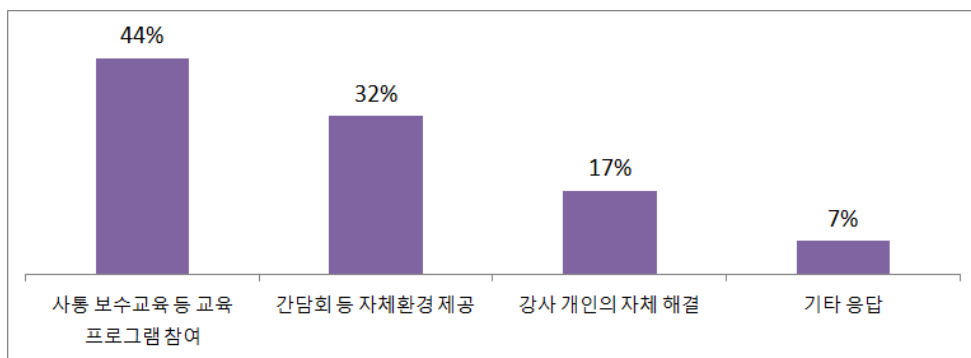
강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는지

응답 항목 구분	단위(명)
예	72
아니요	69
무효응답	1
응답자 수	1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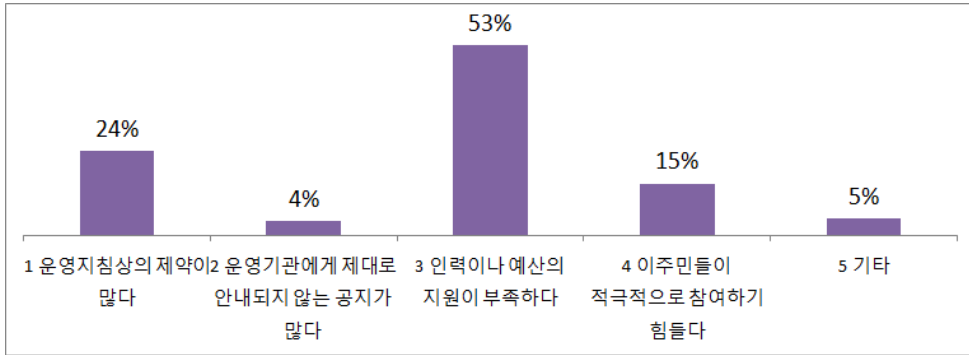
(예)를 응답한 경우, 어떤 환경이 제공되는지 (서술)

응답 분류	단위(명)
사통 보수교육 등 교육 프로그램 참여	26
간담회 등 자체환경 제공	19
강사 개인의 자체 해결	10
기타 응답	4
무효응답	3
응답자 수	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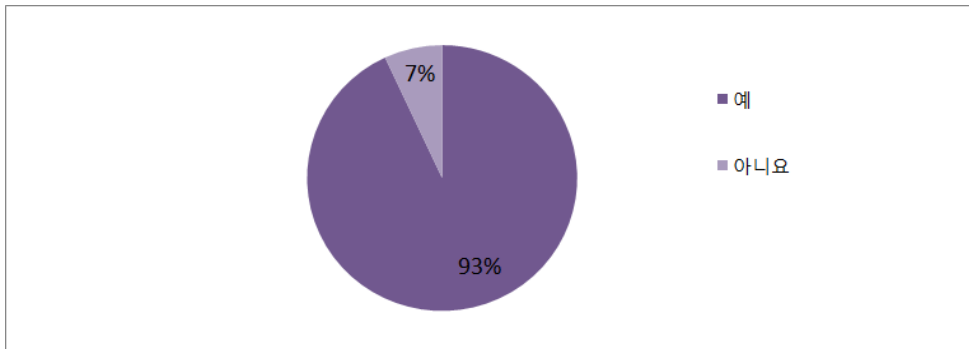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가장 어려운 부분

응답 항목 구분	단위(명)
1 운영지침상의 제약이 많다	31
2 운영기관에게 제대로 안내되지 않는 공지가 많다	5
3 인력이나 예산의 지원이 부족하다	70
4 이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힘들다	19
5 기타	6
무효응답	13
응답자 수	144



정부차원의 개선이나 지원확대가 필요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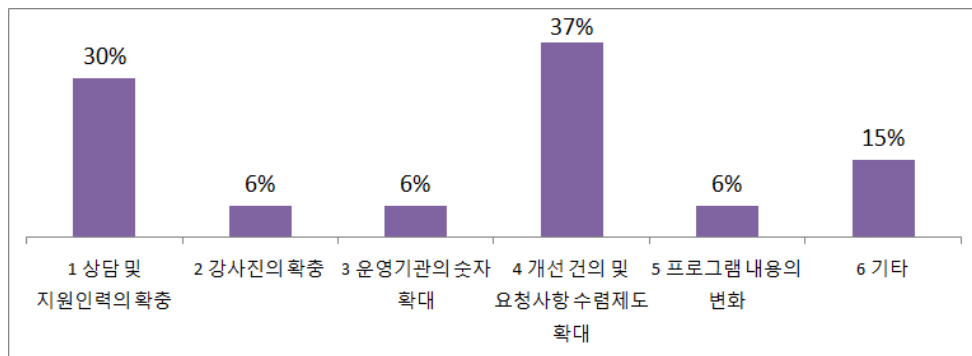
응답 항목 구분	단위(명)
예	134
아니요	10
무효응답	0
응답자 수	144



32 2017년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예)를 응답한 경우, 어떤 부분의 지원이 가장 시급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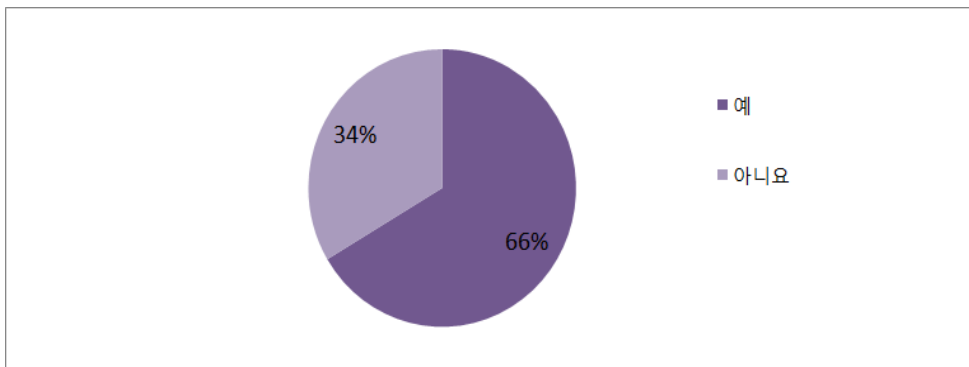
응답 항목 구분	단위(명)
1 상담 및 지원인력의 확충	35
2 강사진의 확충	7
3 운영기관의 숫자 확대	7
4 개선 건의 및 요청사항 수렴제도 확대	43
5 프로그램 내용의 변화	7
6 기타	17
무효응답	20
응답자 수	136



3) 단계 승급의 방식, 효과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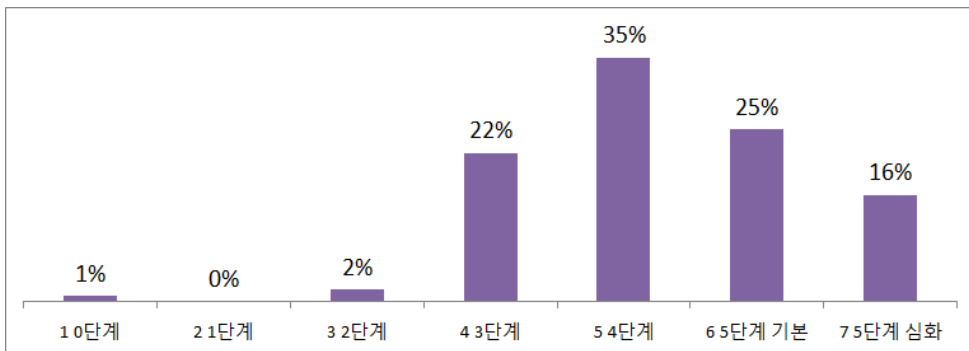
참여자는 각 단계를 이수하고 나면 주어지는 혜택을 받기에 충분한 이해에 도달했다고 보는지

응답 항목 구분	단위(명)
예	91
아니요	46
무효응답	0
응답자 수	137



이주민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단계는 어느 단계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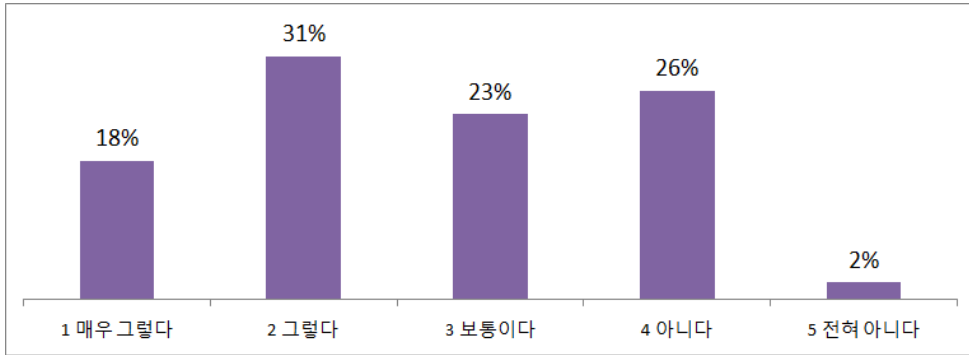
응답 항목 구분	단위(명)
1 0단계	1
2 1단계	0
3 2단계	2
4 3단계	25
5 4단계	41
6 5단계(기본)	29
7 5단계(심화)	18
무효응답	20
응답자 수	136



34 2017년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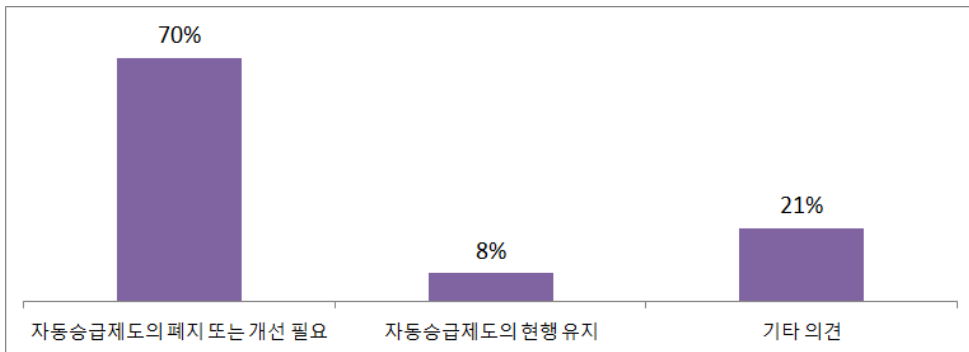
같은 내용을 반복 수료하면 자동으로 승급하는 제도가 참여자의 학습의지에 방해요소로 작용하는지

응답 항목 구분	단위(명)
1 매우 그렇다	24
2 그렇다	42
3 보통이다	32
4 아니다	36
5 전혀 아니다	3
무효응답	2
응답자 수	139



단계별 이수제도는 어떤 부분에서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서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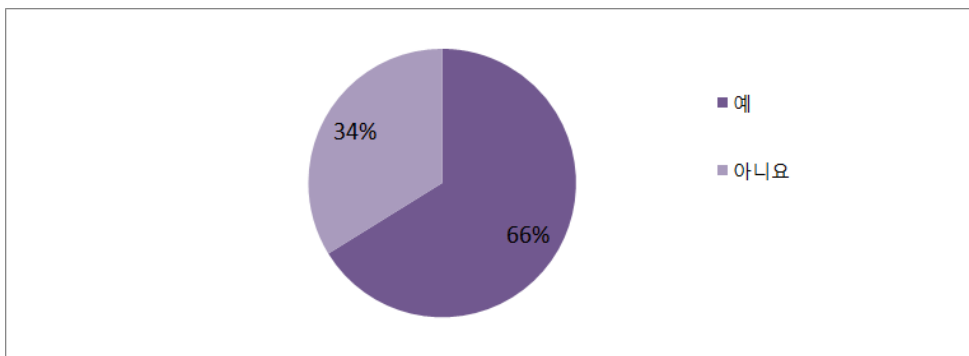
응답 분류	단위(명)
자동승급제도의 폐지 또는 개선 필요	43
자동승급제도의 현행 유지	5
기타 의견	13
무효응답	6
응답자 수	67



4) 실질적 도움 제공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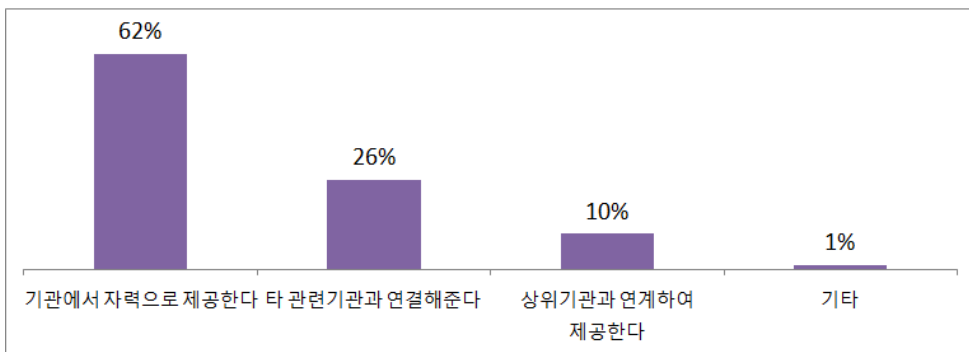
상담, 고충해결을 위한 연계 서비스 체계가 확보되어 있는지

응답 항목 구분	단위(명)
예	94
아니요	48
무효응답	0
응답자 수	142



(예)를 응답한 경우, 어떤 체계로 이루어지는지 (서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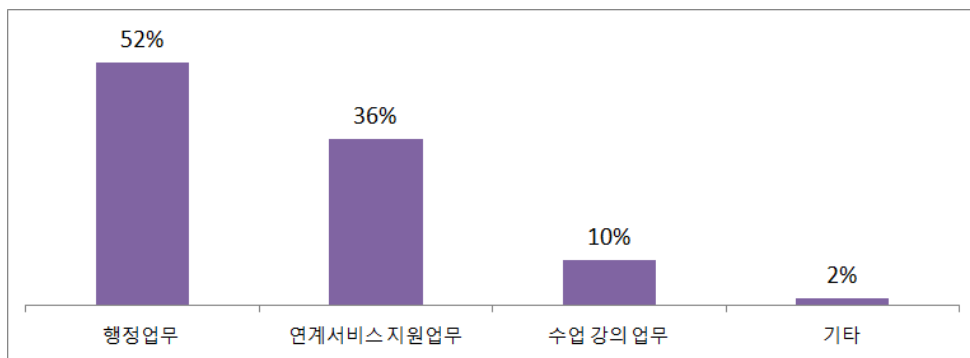
응답 분류	단위(명)
기관에서 자력으로 제공한다	48
타 관련기관과 연결해준다	20
상위기관(거점, 출입국관리사무소 등)과 연계하여 제공한다	8
무효응답	1
응답자 수	78



36 2017년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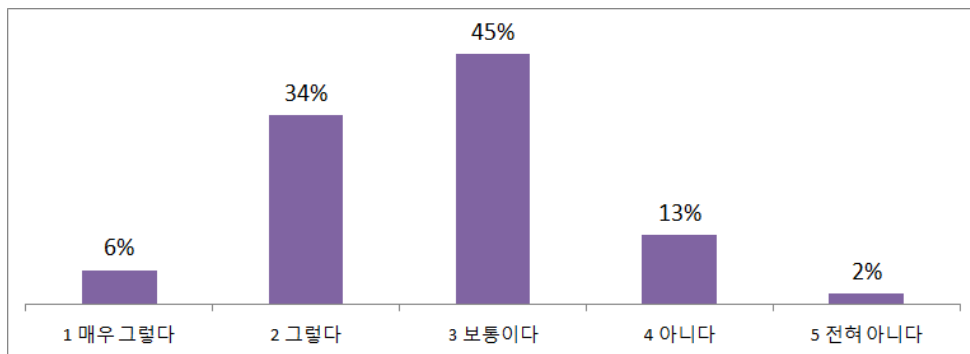
전문인력의 충원이 필요하다면 가장 시급하게 투입되어야 하는 업무가 무엇인지 (서술)

응답 분류	단위(명)
참여자 관리, 홍보, 통역, 거점기관 전담인력 등 행정업무	32
상담, 문제 해결 등 연계서비스 지원업무	22
수업 강의업무	6
기타	1
무효응답	4
응답자 수	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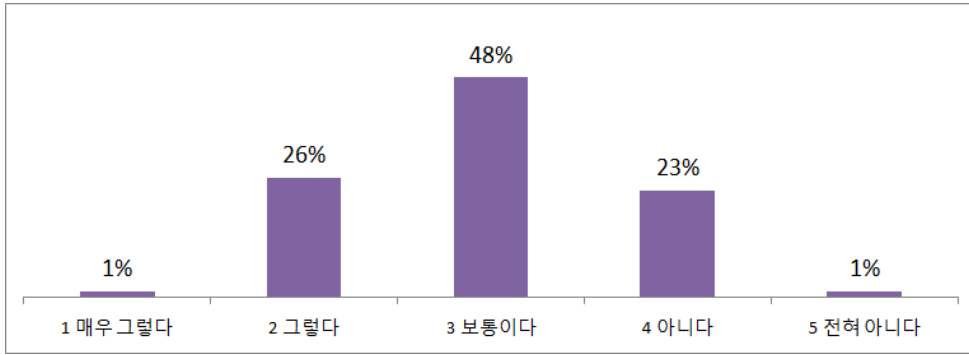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참여자들의 희망사항이나 개선 요청사항을 접수할만한 체계를 갖추었다고 보는지

응답 항목 구분	단위(명)
1 매우 그렇다	9
2 그렇다	49
3 보통이다	65
4 아니다	18
5 전혀 아니다	3
무효응답	1
응답자 수	1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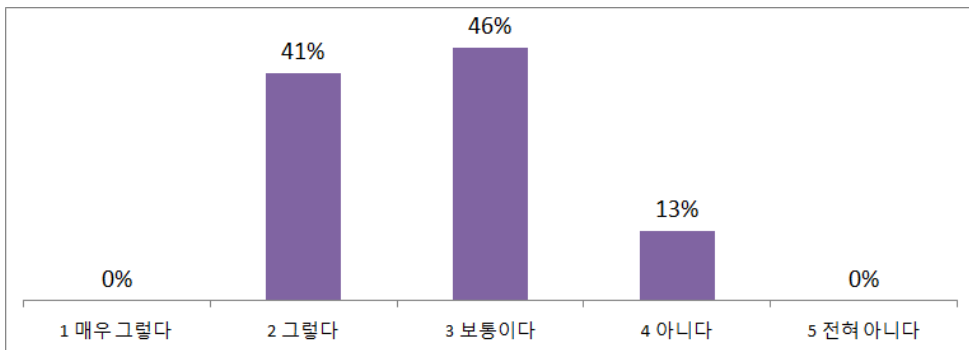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정부에 지원이나 개선을 요청할만한 체계가 있는지

응답 항목 구분	단위(명)
1 매우 그렇다	9
2 그렇다	49
3 보통이다	65
4 아니다	18
5 전혀 아니다	3
무효응답	1
응답자 수	1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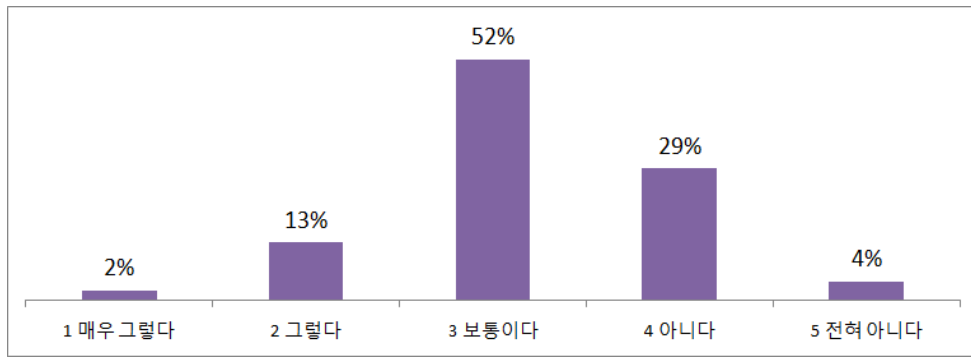
(매우 그렇다, 그렇다)를 응답한 경우, 이를 통해 프로그램에 대한 수정이나 개선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지

응답 항목 구분	단위(명)
1 매우 그렇다	0
2 그렇다	41
3 보통이다	46
4 아니다	13
5 전혀 아니다	0
무효응답	5
응답자 수	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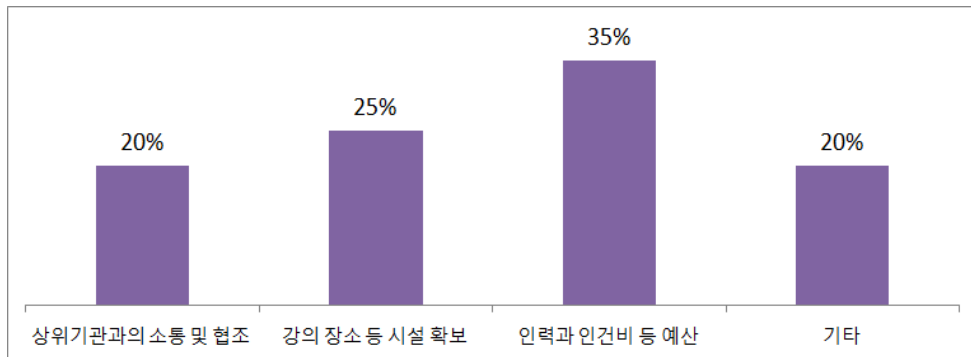
연계 서비스 체계를 확보 혹은 확대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지

응답 항목 구분	단위(명)
1 매우 그렇다	3
2 그렇다	18
3 보통이다	75
4 아니다	41
5 전혀 아니다	6
무효응답	0
응답자 수	143



(예)를 응답한 경우, 이를 위한 개선이나 지원이 필요하다면 어떤 부분인지 (서술)

응답 분류	단위(명)
상위기관과의 소통 및 협조	4
강의 장소 등 시설 확보	5
인력과 인건비 등 예산	7
기타	4
무효응답	5
응답자 수	25



○ 참여자 기본정보

구분	분류 기준	분포
국적 분포	베트남	66명(37%)
	중국	47명(27%)
	캄보디아	10명(6%)
	필리핀	9명(5%)
	태국	6명(3%)
	방글라데시	6명(3%)
	네팔	4명(2%)
	우즈베키스탄	4명(2%)
	기타	22명(12%)
	무응답	3명(2%)
입국 연도 분포	1997년 이전	1명(1%)
	1998 ~ 2002년	5명(3%)
	2003 ~ 2007년	7명(4%)
	2008 ~ 2012년	57명(32%)
	2013 ~ 2017년	104명(59%)
	무응답	3명(2%)

40 2017년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구분	분류 기준	분포
입국 목적 분포	결혼이민	99명(56%)
	경제활동	35명(20%)
	유학	19명(11%)
	가족 상봉	7명(4%)
	거주	2명(1%)
	중도입국	2명(1%)
	기타	2명(1%)
	무응답	11명(6%)
체류 자격(비자) 분포	결혼이민	91명(51%)
	경제활동	36명(20%)
	재외동포	18명(10%)
	유학	11명(6%)
	거주	6명(3%)
	영주	3명(2%)
	국적취득(귀화)	8명(5%)
	미응답	4명(2%)
직업 분포	주부	88명(50%)
	일반 노동자	47명(27%)
	특수, 전문직 노동자	9명(5%)
	학생	19명(11%)
	무직	3명(2%)
	무응답	11명(6%)

구분	분류 기준	분포
연령 분포	24세 미만	22명(12%)
	25 ~ 29세	43명(24%)
	30 ~ 34세	46명(26%)
	35 ~ 39세	15명(8%)
	40 ~ 44세	11명(6%)
	45 ~ 49세	7명(4%)
	50세 이상	3명(2%)
	무응답	30명(17%)
성별 분포	남	40명(23%)
	여	136명(77%)
	무응답	1명(1%)
거주지 분포	서울, 경기	57명(32%)
	경상	42명(24%)
	전라	41명(23%)
	강원	8명(5%)
	충청	8명(5%)
	제주	9명(5%)
	무응답	12명(7%)

42 2017년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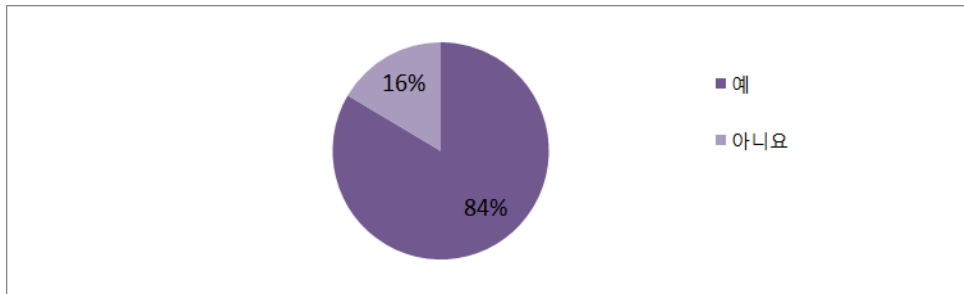
구분	분류 기준	분포
참여 시간 분포	100시간 미만	54명(31%)
	100 ~ 200시간	41명(23%)
	200 ~ 300시간	24명(14%)
	300시간 이상	30명(17%)
	무응답	28명(16%)
참여중인 단계 분포	1단계	8명(5%)
	2단계	11명(6%)
	3단계	46명(26%)
	4단계	42명(24%)
	5단계	49명(28%)
	이수 완료	10명(6%)
	무응답	11명(6%)

○ 참여자 항목별 세부

1)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계기 및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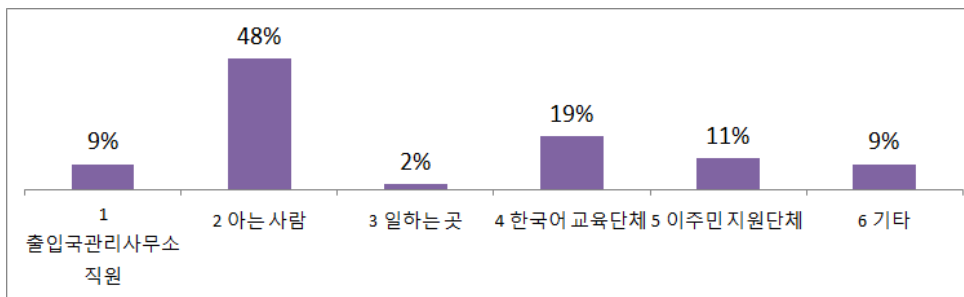
한국에 와서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나 안내를 받았는지

응답 항목 구분	단위(명)
예	147
아니오	59
무효응답	0
응답자 수	176



(예)를 응답한 경우, 누구로부터 소개받았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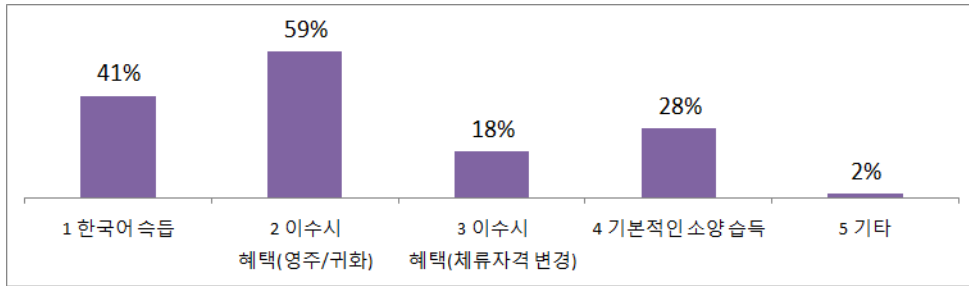
응답 항목 구분	단위(명)
1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14
2 아는 사람	72
3 일하는 곳	3
4 한국어 교육 단체	29
5 이주민 지원 단체	17
6 기타	14
무효응답	0
응답자 수	149



44 2017년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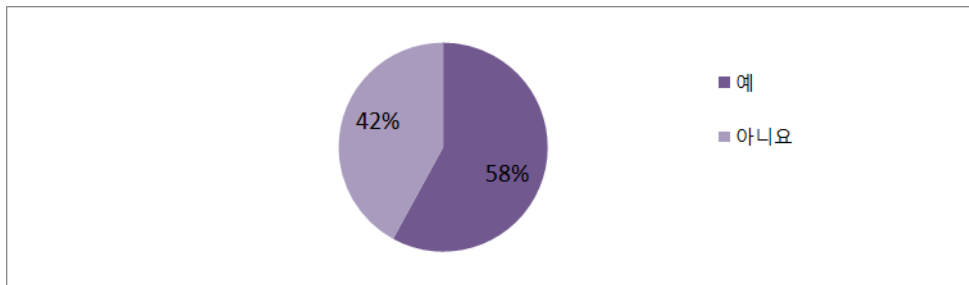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계기 (복수응답 가능)

응답 항목 구분	단위(명)
1 한국어 습득	71
2 이주시 혜택(영주/귀화)	102
3 이주시 혜택(체류자격 변경)	32
4 기본적인 소양 습득(문화, 법, 상식 등)	48
5 기타	3
응답 수	256
응답자 수	1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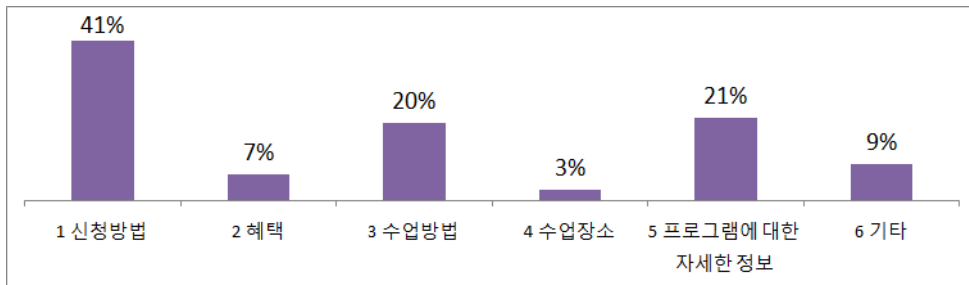
사회통합정보망 홈페이지에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절차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안내되어 있는지

응답 항목 구분	단위(명)
예	102
아니오	74
무효응답	0
응답자 수	1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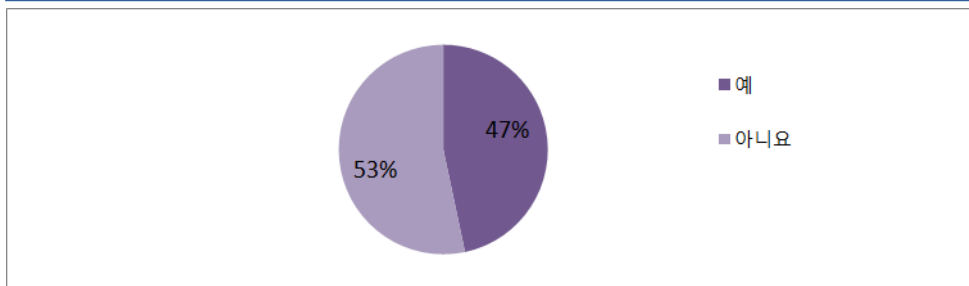
(아니오)를 응답한 경우,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 무엇인지

응답 항목 구분	단위(명)
1 신청방법	31
2 혜택	5
3 수업방법	15
4 수업장소	2
5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	16
6 기타	7
무효응답	9
응답자 수	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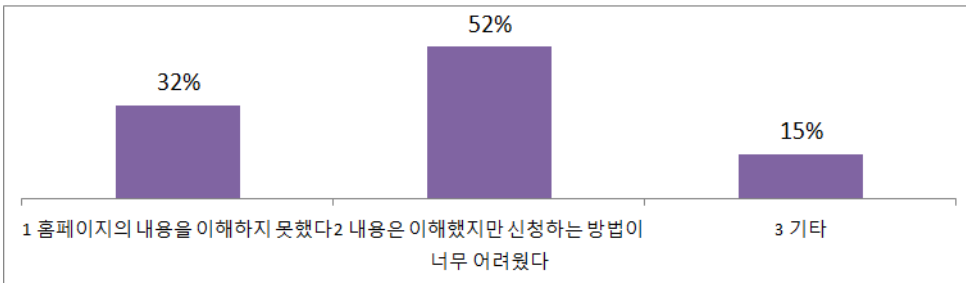
참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는지

응답 항목 구분	단위(명)
예	77
아니오	88
무효응답	0
응답자 수	1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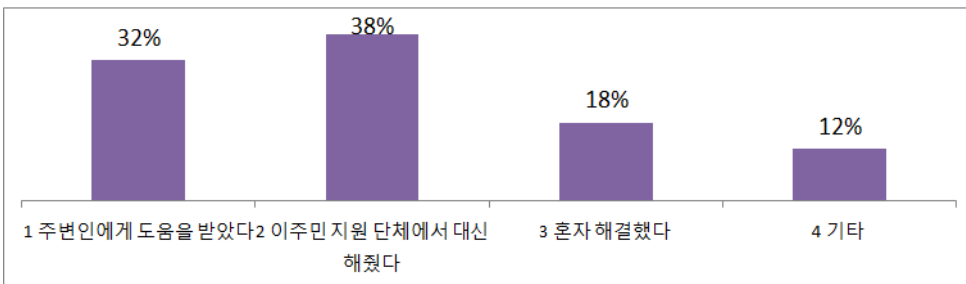
(예)를 응답한 경우,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응답 항목 구분	단위(명)
1 신청방법	31
2 혜택	5
3 수업방법	15
4 수업장소	2
5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	16
6 기타	7
무효응답	9
응답자 수	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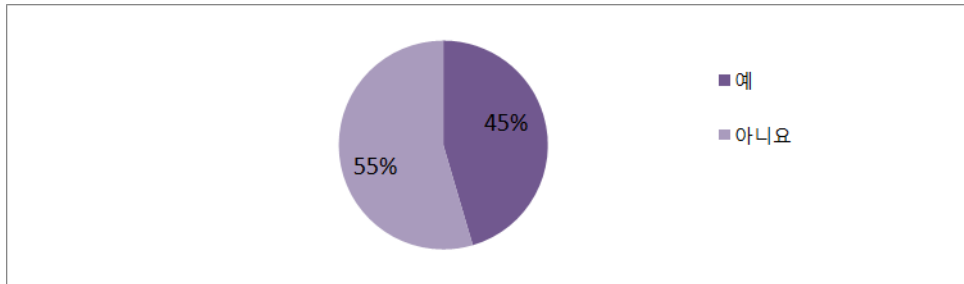
(예)를 응답한 경우, 어떻게 해결했는지

응답 항목 구분	단위(명)
1 주변인에게 도움을 받았다	27
2 이주민 지원 단체에서 대신 해줬다	32
3 혼자 해결했다	15
4 기타	10
무효응답	4
응답자 수	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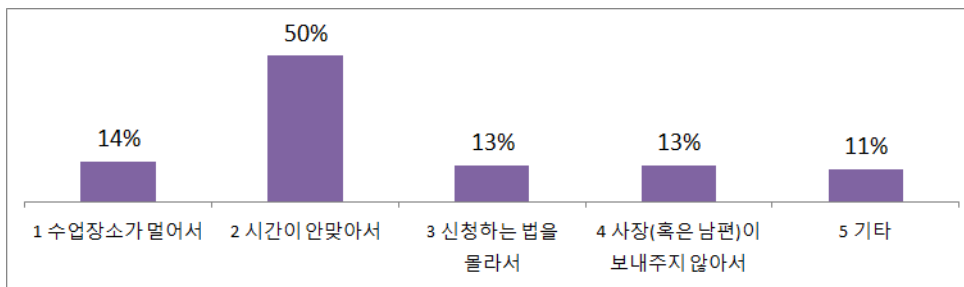
주변에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하나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지

응답 항목 구분	단위(명)
예	80
아니요	96
무효응답	0
응답자 수	176



(예)를 응답한 경우, 왜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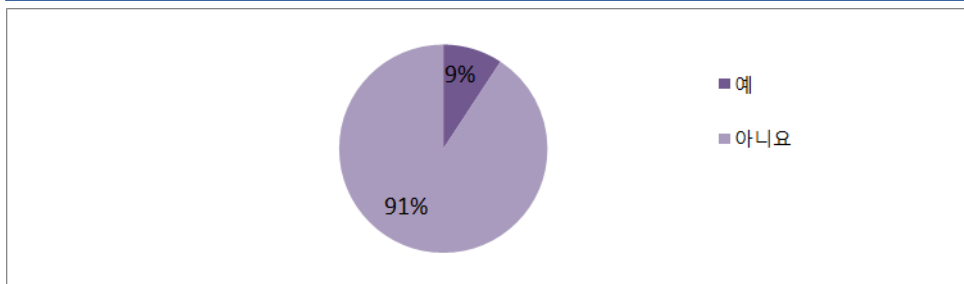
응답 항목 구분	단위(명)
1 수업장소가 안 맞아서	10
2 시간이 안 맞아서	36
3 신청하는 법을 몰라서	9
4 사장(혹은 남편 등)이 보내주지 않아서	9
5 기타	8
무효응답	13
응답자 수	85



2) 수업에 대한 효과 및 만족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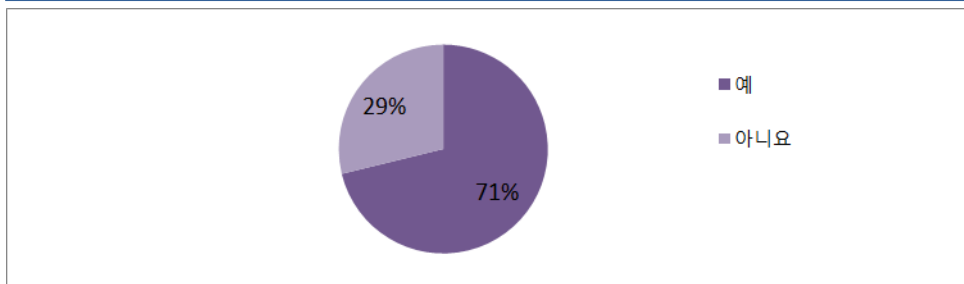
교재에 차별적이거나 불편한 내용이 있었는지

응답 항목 구분	단위(명)
예	16
아니요	157
무효응답	0
응답자 수	1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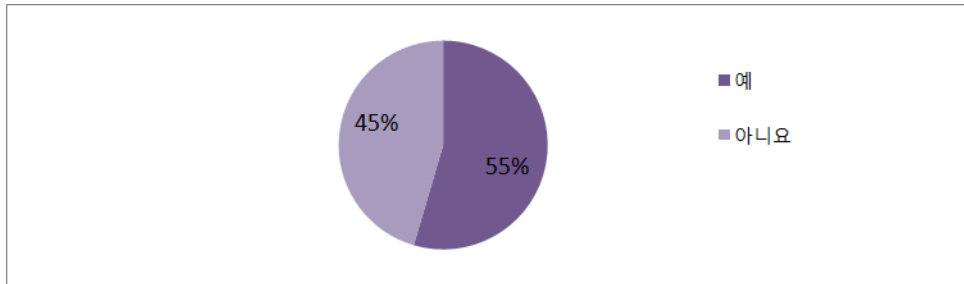
수업은 자신이 태어난 국가에서 갖게 된 가치관 및 정서를 보존,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는지

응답 항목 구분	단위(명)
예	121
아니요	49
무효응답	0
응답자 수	1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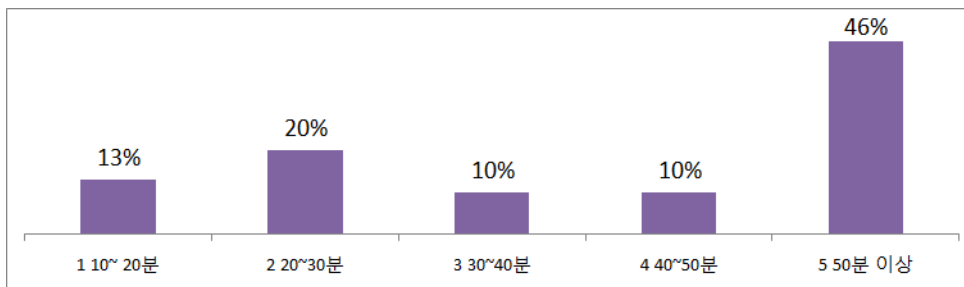
점심이나 식사시간이 있는지

응답 항목 구분	단위(명)
예	96
아니요	80
무효응답	1
응답자 수	177



(예)를 응답한 경우, 점심이나 저녁식사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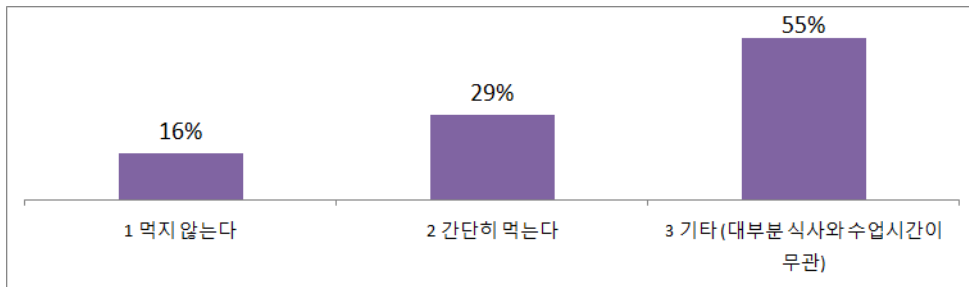
응답 항목 구분	단위(명)
1 10~20분	13
2 20~30분	20
3 30~40분	10
4 40~50분	10
5 50분 이상	46
무효응답	0
응답자 수	99



50 2017년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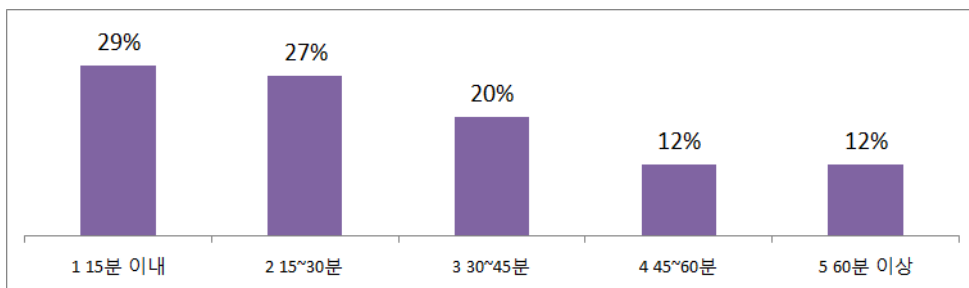
(예)를 응답한 경우, 점심이나 저녁식사는 어떻게 해결하는지

응답 항목 구분	단위(명)
1 먹지 않는다	12
2 쉬는 시간에 간단히 먹는다	22
3 기타 (*대부분 식사와 수업시간이 겹치지 않는다고 응답)	42
무효응답	0
응답자 수	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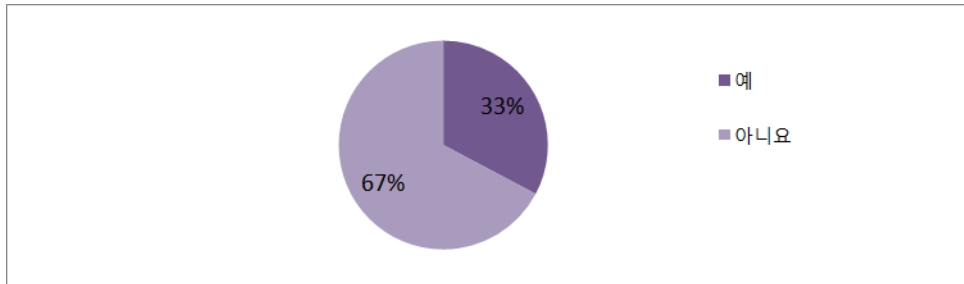
수업을 듣기 위해 운영기관으로 이동하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응답 항목 구분	단위(명)
1 15분 이내	50
2 15~30분	47
3 30~45분	35
4 45~60분	21
5 60분 이상	21
무효응답	0
응답자 수	1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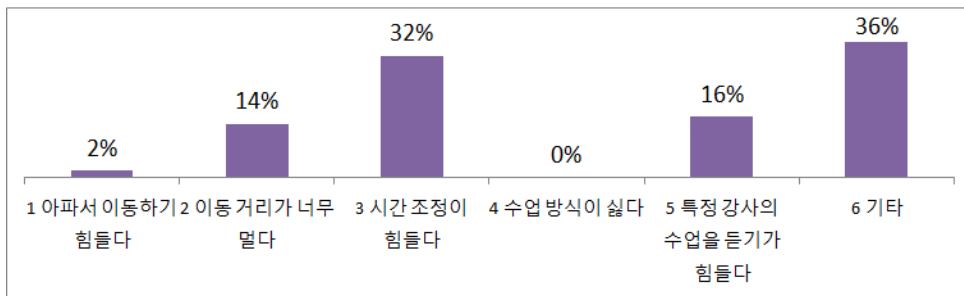
화상교육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지

응답 항목 구분	단위(명)
예	57
아니요	117
무효응답	1
응답자 수	175



(예)를 응답한 경우, 왜 참여하고 싶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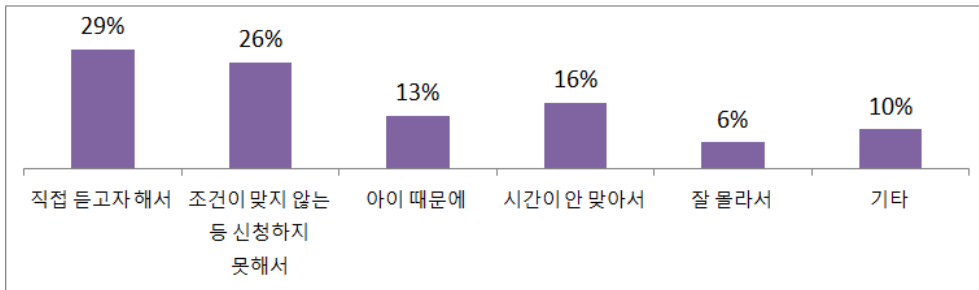
응답 항목 구분	단위(명)
1 아파서 이동하기 힘들다	1
2 이동 거리가 너무 멀다	8
3 시간 조정이 힘들다	18
4 수업 방식이 싫다	0
5 특정 강사의 수업을 듣기가 힘들다	9
6 기타	20
무효응답	0
응답자 수	56



52 2017년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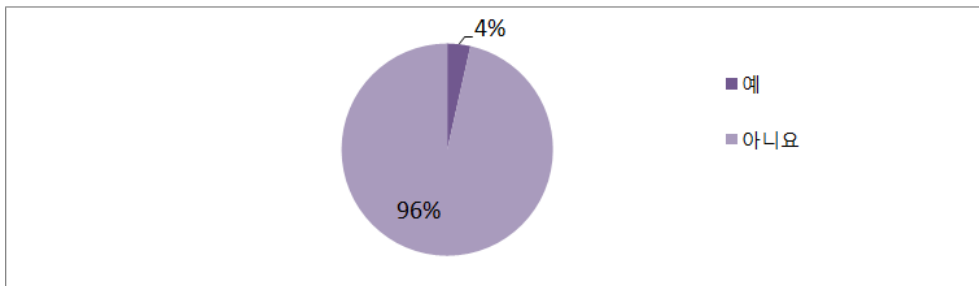
(예)를 응답한 경우, 왜 참여하지 못했는지 (서술)

응답 분류	단위(명)
직접 듣고자 해서	9
조건이 맞지 않는 등 신청하지 못해서	8
아이 때문에	4
시간이 안 맞아서	5
잘 몰라서	2
기타	3
무효응답	2
응답자 수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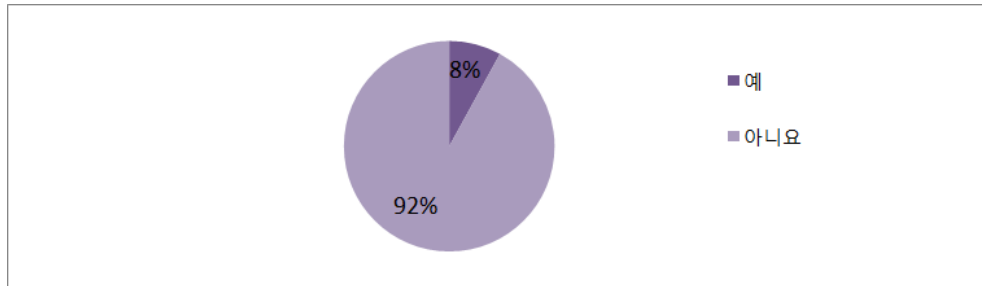
수업을 할 때 특정 종교에 대해 지나친 강조나 강요를 받은 적이 있는지

응답 항목 구분	단위(명)
예	6
아니요	164
무효응답	0
응답자 수	1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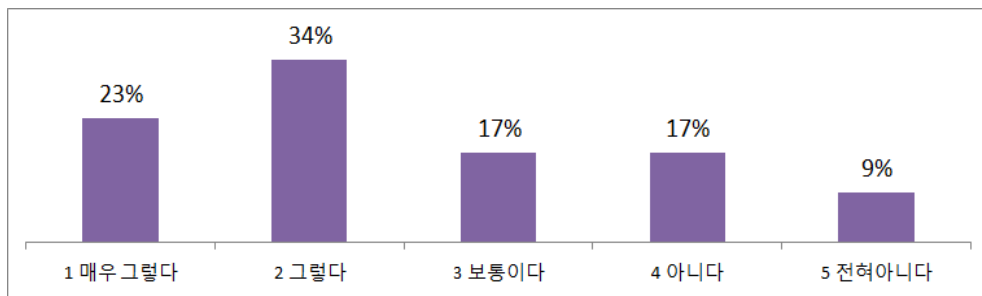
강사가 차별적인 얘기를 한 적이 있는지

응답 항목 구분	단위(명)
예	14
아니요	161
무효응답	0
응답자 수	175



수업시간을 제외하고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해 공부하고 있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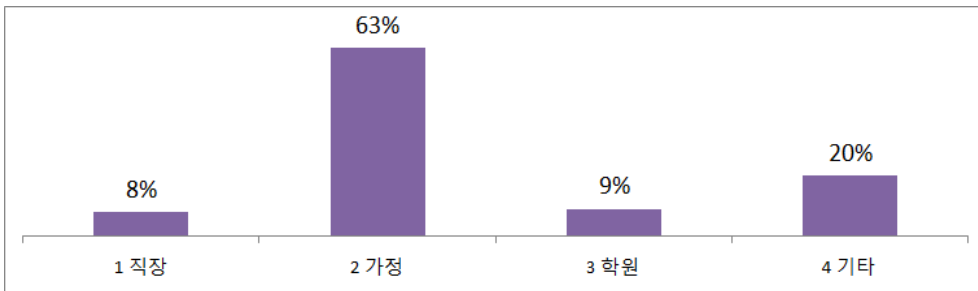
응답 항목 구분	단위(명)
1 매우 그렇다	40
2 그렇다	59
3 보통이다	29
4 아니다	29
5 전혀 아니다	16
무효응답	1
응답자 수	174



54 2017년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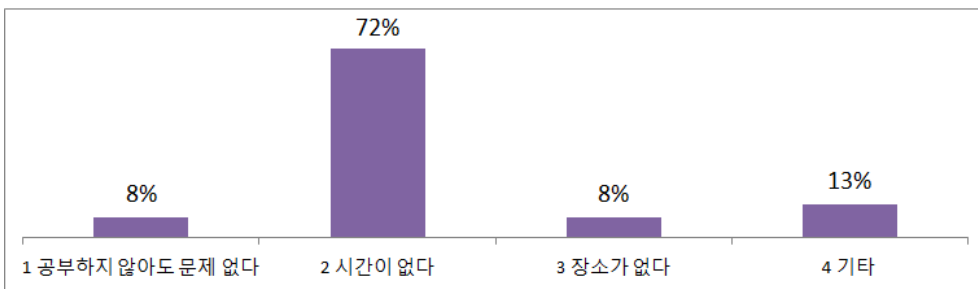
(매우 그렇다, 그렇다)를 응답한 경우, 어디서 하는지

응답 항목 구분	단위(명)
1 직장	8
2 가정	62
3 학원	9
4 기타	20
무효응답	10
응답자 수	1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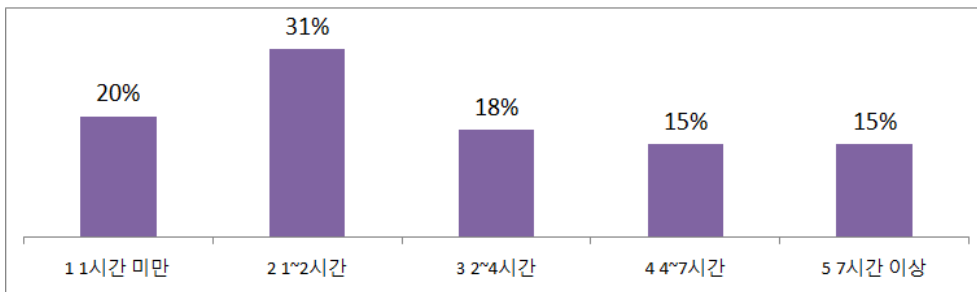
(아니다, 전혀 아니다)를 응답한 경우, 왜 하지 않는지

응답 항목 구분	단위(명)
1 공부하지 않아도 문제없다	3
2 시간이 없다	28
3 장소가 없다	3
4 기타	5
무효응답	3
응답자 수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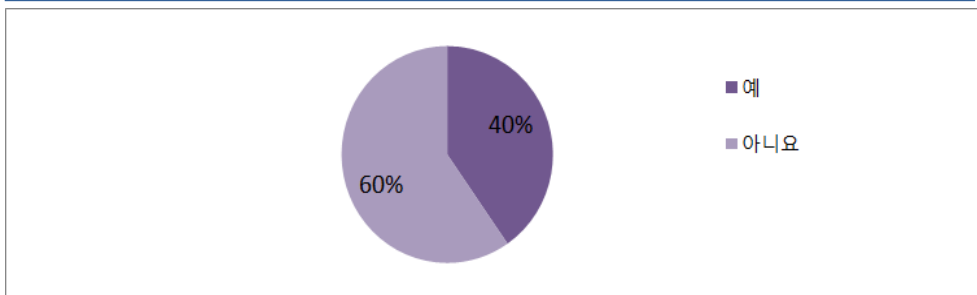
수업시간을 제외하고 1주일에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해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응답 항목 구분		단위(명)
1	1시간 미만	34
2	1~2시간	53
3	2~4시간	30
4	4~7시간	26
5	7시간 이상	26
무효응답		3
응답자 수		1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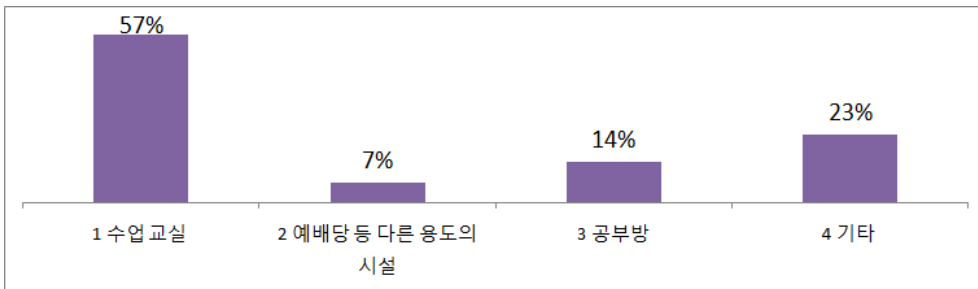
운영기관이나 다른 단체가 개인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지

응답 항목 구분	단위(명)
예	69
아니요	102
무효응답	0
응답자 수	1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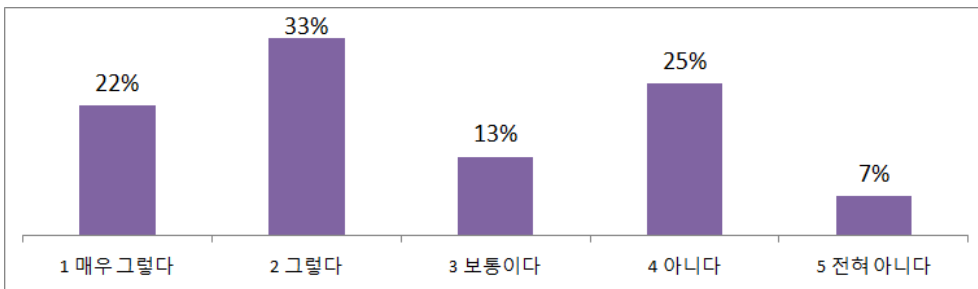
(예)를 응답한 경우, 어떤 장소인지

응답 항목 구분	단위(명)
1 수업 교실	42
2 예배당 등 다른 용도의 시설	5
3 공부방	10
4 기타	17
무효응답	1
응답자 수	75



(아니오)를 응답한 경우, 장소가 필요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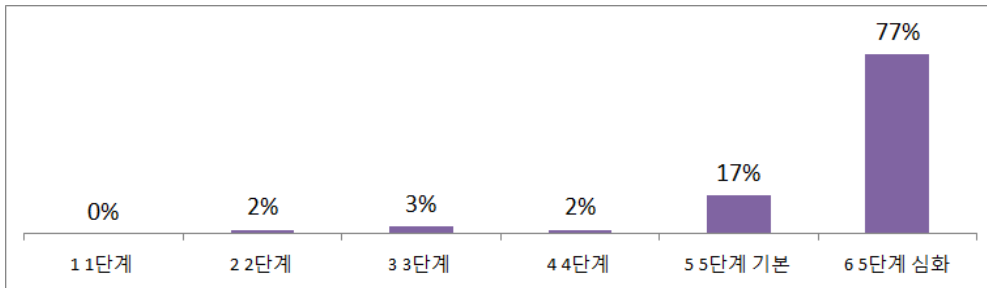
응답 항목 구분	단위(명)
1 매우 그렇다	23
2 그렇다	35
3 보통이다	14
4 아니다	27
5 전혀 아니다	7
무효응답	1
응답자 수	107



4) 실제 일상과의 연관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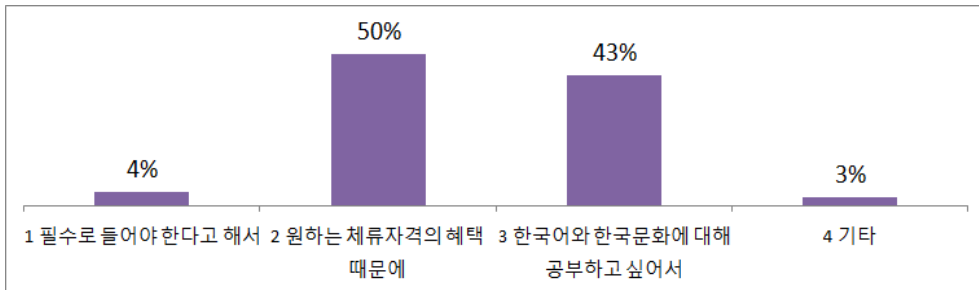
최종적으로 몇 단계까지 참여하고 싶은지

응답 항목 구분		단위(명)
1	1단계	0
2	2단계	3
3	3단계	5
4	4단계	3
5	5단계 (기본과정)	29
6	5단계 (심화과정)	134
무효응답		0
응답자 수		1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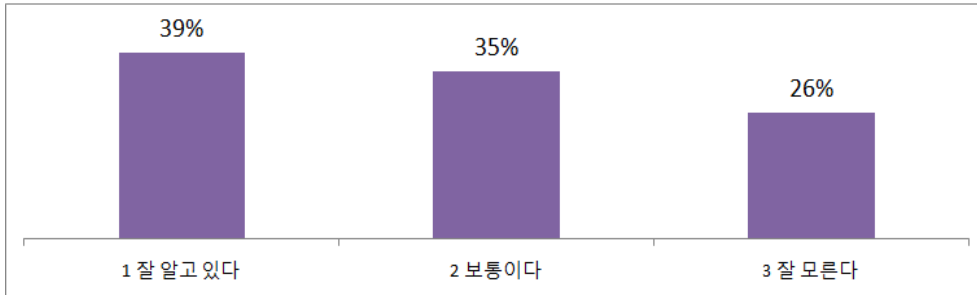
해당 단계까지 참여하고 싶은 이유가 무엇인지

응답 항목 구분		단위(명)
1	필수로 들어가야 한다고 해서	7
2	원하는 체류자격의 혜택 때문에	79
3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해 공부하고 싶어서	68
4	기타	4
무효응답		17
응답자 수		1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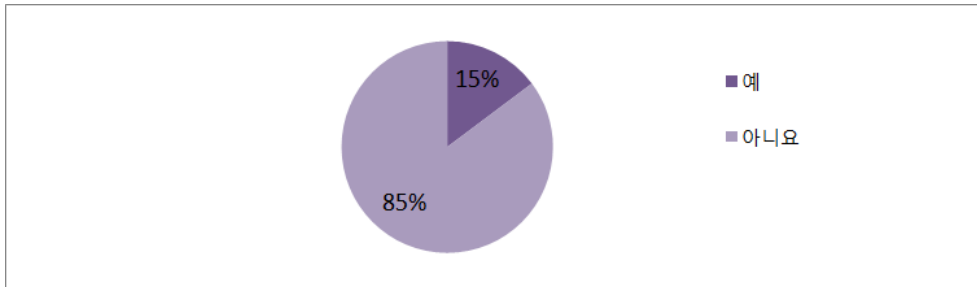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대처법을 알고 있는지

응답 항목 구분	단위(명)
1 잘 알고 있다	68
2 보통이다	61
3 잘 모른다	46
무효응답	0
응답자 수	1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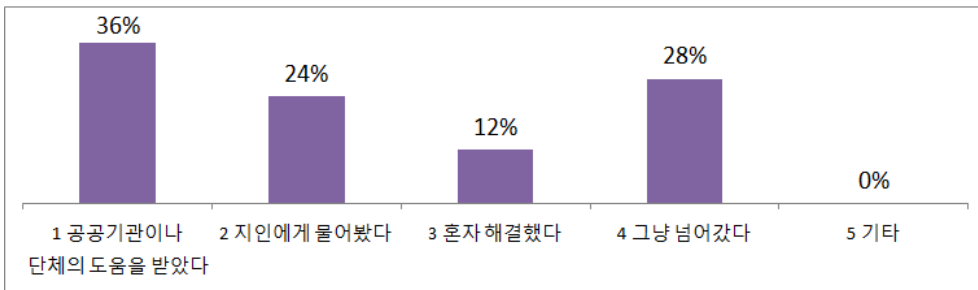
최근 가정, 회사 등에서 부당한 일을 당한 적이 있는지

응답 항목 구분	단위(명)
예	26
아니요	150
무효응답	0
응답자 수	1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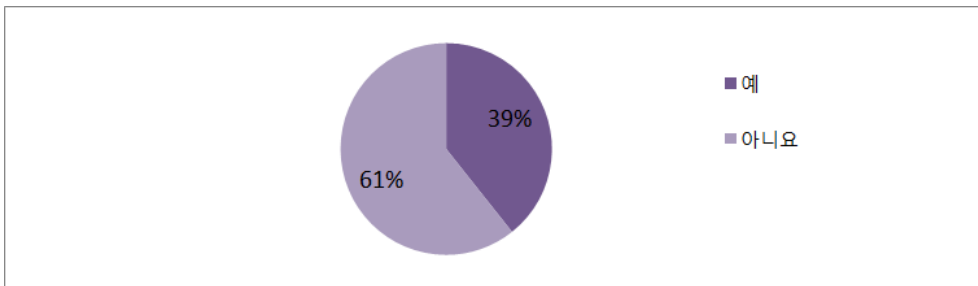
(예)를 응답한 경우, 어떻게 대처했는지

응답 항목 구분	단위(명)
1 공공기관이나 단체의 도움을 받았다	9
2 지인에게 물어봤다	6
3 혼자 해결했다	3
4 그냥 넘어갔다	7
5 기타	0
무효응답	4
응답자 수	29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고충이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운영기관에서 상담 받은 적이 있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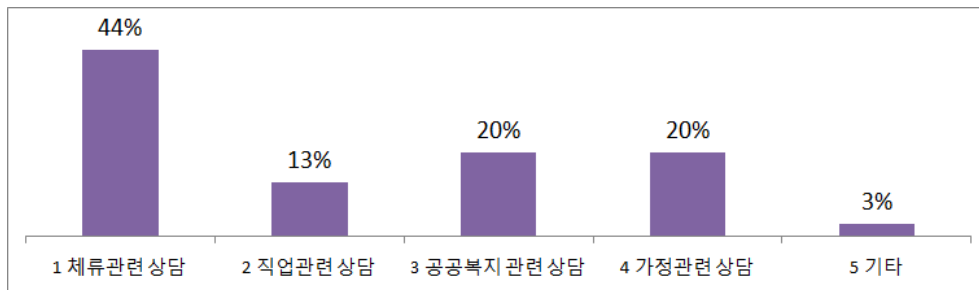
응답 항목 구분	단위(명)
예	68
아니요	105
무효응답	0
응답자 수	173



60 2017년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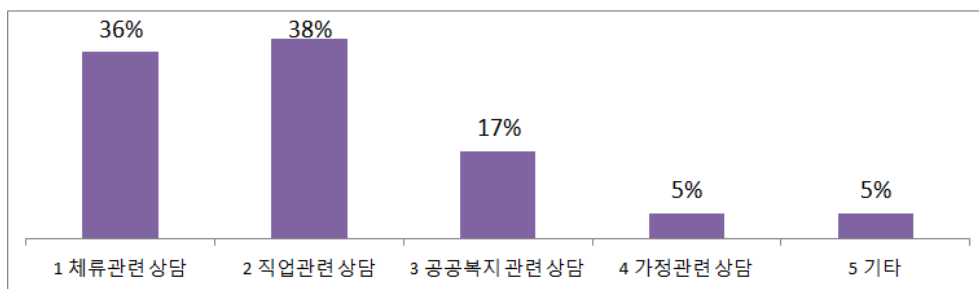
(예)를 응답한 경우, 어떤 내용을 상담 받았는지

응답 항목 구분	단위(명)
1 체류관련 상담	31
2 직업관련 상담	9
3 공공복지관련 상담	14
4 가정 관련 상담	14
5 기타	2
무효응답	11
응답자 수	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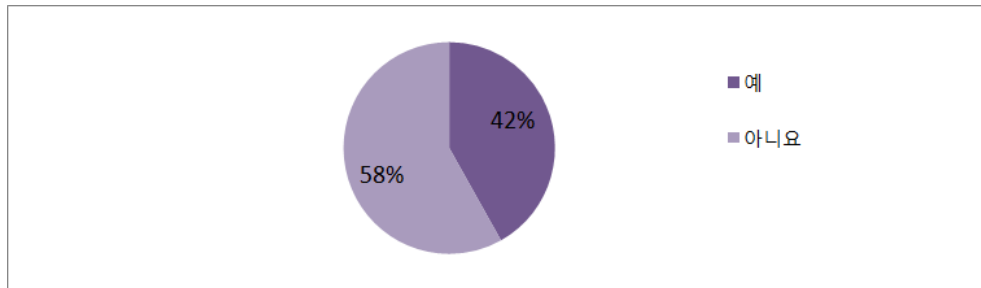
(아니오)를 응답한 경우, 상담 받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상담을 받고 싶은지

응답 항목 구분	단위(명)
1 체류관련 상담	30
2 직업관련 상담	32
3 공공복지관련 상담	14
4 가정 관련 상담	4
5 기타	4
무효응답	9
응답자 수	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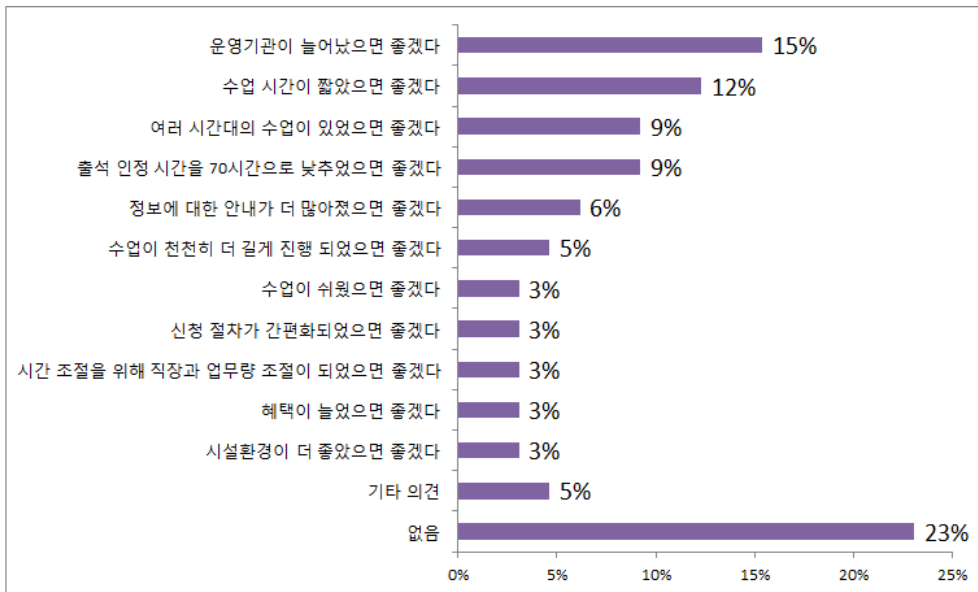
학습에 대한 지원이나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한 개선을 건의할 수 있는지

응답 항목 구분	단위(명)
예	72
아니요	100
무효응답	1
응답자 수	173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입장에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서울)

응답 분류	단위(명)
운영기관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10
수업 시간이 짧았으면 좋겠다	8
여러 시간대의 수업이 있었으면 좋겠다	6
출석 인정 시간을 70시간으로 낮추었으면 좋겠다	6
정보에 대한 안내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4
수업이 천천히 더 길게 진행 되었으면 좋겠다	3
수업이 쉬웠으면 좋겠다	2
신청 절차가 간편화되었으면 좋겠다	2
시간 조절을 위해 직장 과 업무량 조절이 되었으면 좋겠다	2
혜택이 늘었으면 좋겠다	2
시설환경이 더 좋았으면 좋겠다	2
기타 의견	3
없음	15
무효응답	5
응답자 수	70



2017년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 인 쇄 | 2017년 12월

| 발 행 | 2017년 12월

| 발행인 | 이 성 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

| 주 소 | (04551)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 저동빌딩 13층

| 전 화 | (02) 2125-9822 | F A X | (02) 2125-0918

| Homepage | www.humanrights.go.kr

| 인쇄처 | 도서출판 한학문화

| 전 화 | (02) 313-7593 | F A X | (02) 393-3016

발간등록번호 11-1620000-000641-10